

第25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會事務處

2005年3月2日(水) 午後 3時

議事日程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 선출안
2.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案
3.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4. 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7. 法院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8.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0. 家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11.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12.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13.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1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5.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中改正法律案
16.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1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8.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9. 割賦去來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0.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1.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23. 韓國國際交流財團法中改正法律案
24. 在外同胞財團法中改正法律案
25.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
26.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
27.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28.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
29.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30.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
31.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32. 基礎科學研究振興法中改正法律案
3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안
34.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 관한법률안

35.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36. 郵便法中改正法律案
37.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
38. 大韓民國藝術院法中改正法律案
39.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4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
44.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
4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47.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8.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49.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50.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5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2.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53. 內水面漁業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54. 水上레저安全法改正法律案
55. 船員法中改正法律案
56.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57. 公有水面管理法中改正法律案
58. 公有水面埋立法中改正法律案
59.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60.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61.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62. 企業活動規制緩和에關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63. 廢鑛地域開發支援에關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6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5. 入養促進및節次에關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66. 應急醫療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67.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68.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
69.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70. 醫療法中改正法律案
71.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72. 公衆衛生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7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大氣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76. 水質環境保全法 全部改正法律案(代案)
77.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
78.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79. 水道法中改正法律案
80.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82.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83.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
84.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85. 障礙人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86.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88.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8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90.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91.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9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93.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 법률안
9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96.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97.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
9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99. 特殊教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100.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101. 學校用地確保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 법률안
102.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103.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104.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5.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6.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 한 연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107. 한국투자공사법안
108. 調達事業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10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
110.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附議된案件

2.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
3.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6. 채무자 회생 및 과산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7. 法院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8.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최연희 · 심재엽 · 박세환 · 김재원 · 이계진 · 고진화 · 윤호중 · 이은영 · 정문현 · 민병두 · 조일현 · 이광재 · 정성호 · 허천 · 정몽준 의원 발의) 10
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구논희 · 김애실 · 김원웅 · 김현미 · 박재완 · 엄호성 · 오제세 · 유승희 · 이경숙 · 이상경 · 이원영 · 이윤

성 · 장향숙 · 정청래 · 진수희 · 한병도 · 황우여 의원 발의)	10
10. 家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엄호성 · 이재오 · 서병수 · 김영숙 · 안명옥 · 맹형규 · 이인기 · 이성권 · 박성범 · 이혜훈 · 김희정 · 김재경 · 윤건영 의원 발의)	10
11.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
4. 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
12.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정무위원장 제출)	20
13. 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정무위원장 제출)	20
14.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5.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16.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1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8.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2
19. 割賦去來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 · 김양수 · 유승민 · 엄호성 · 정중복 · 나경원 · 박찬숙 · 임태희 · 진영 · 이승희 · 이상경 의원 발의)	22
20.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 · 김낙순 · 김영춘 · 김원웅 · 박명광 · 신학용 · 우제창 · 우제항 · 윤호중 · 이근식 · 이상경 · 채수찬 · 최재성 의원 발의)	22
21.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박형준 · 김양수 · 이계경 · 권철현 · 이성권 · 박승환 · 안홍준 · 정병국 · 유기준 · 김희정 · 정중복 · 심재철 · 김석준 · 정장선 · 박재완 · 손봉숙 의원 발의)	22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 · 송영길 · 창선 · 김명자 · 장영달 · 노현송 · 이원영 · 최성 · 문학진 · 신기남 · 조경태 · 강혜숙 · 정청래 · 장향숙 · 우원식 · 주승용 · 신중식 · 장복심 · 이인기 · 이광철 · 서갑원 · 김동철 · 김영주 · 이인영 · 이상경 · 박명광 · 조배숙 · 정장선 · 김재홍 · 한병도 · 이근식 · 염동연 · 안영근 · 강창일 · 복기왕 · 김영춘 · 임종석 · 한명숙 · 원혜영 · 정성호 · 문석호 · 구논희 · 김형주 · 김태홍 · 최재성 · 백원우 · 지병문 · 우상호 · 민병두 · 이철우 · 김춘진 · 우제항 · 오제세 의원 발의)	22
23. 韓國國際交流財團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24. 在外同胞財團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96.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장 제출)	24
97.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김명자 의원 발의)(김명자 의원 외 56인 발의)	25
98. 1959년12월31일이전에 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장영달 · 김명자 · 김명주 · 김영덕 · 김용갑 · 김종률 · 김태홍 · 노웅래 · 노현송 · 류근찬 · 문학진 · 문희상 · 박순자 · 박재완 · 신국환 · 신기남 · 신중식 · 심재덕 · 엄호성 · 오시덕 · 오제세 · 유재건 · 이근식 · 이낙연 · 이상득 · 장윤석 · 정성호 · 조성태 · 최연희 · 최재성 · 황우여 의원 발의)	25
25.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26
26.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26
27.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26
28.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26

29.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6
30.	遊船渡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6
31.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6
32.	基礎科學研究振興法中改正法律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창선·공성진·안병엽·전여옥·진영·엄호성·권영세·김명자·권선택·김태환·김재경·심재철·우윤근·김성곤·오시덕·황진하·유재건·이용희·김무성·조배숙·배기선·정의용·허천·황우여·이석현·김희선·정세균·박진·원희룡·김부겸·윤호중·김한길·양형일·박상돈·최인기·이윤성·권오을·이군현·서갑원·권철현·김효석·김기현·이정일·이낙연·김기석·고홍길·이인기·이광재·신학용·박종근·박순자·김영선·제종길·이계진·최성·최재천·장영달·조경태·신국환·이강래·이병석·강기정·박계동·이상열·염동연·안영근·김맹곤·곽성문·김태년·유승민·안상수·이원영·김병호·김양수·이상배·이종구·정갑윤·이상경·정병국·한화갑·김원웅·최재성·류근찬·주성영·원혜영·강재섭·김애실·오제세·이시종·안택수·허태열·정성호·진수희·김낙순·김영춘·김석준·김문수·김광원·이미경·이경재·배일도·박찬석·김진표·이상득·강성중·박병석·김형오·이강두·임태희·맹형규·유승희 의원 발의)	29
3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유승희·구논희·제종길·노웅래·이화영·선병렬·우윤근·김태년·김진표·이영호·권선택·우원식·한광원·백원우·조정식·윤호중·노영민·이계안·문석호·전병헌·이종걸 의원 발의)	29
34.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35.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재완·박순자·황우여·정종복·권영세·김희정·이인기·이성권·진영 의원 발의)	29
36.	郵便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9
37.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9
38.	大韓民國藝術院法中改正法律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임종인·안민석·우상호·배기선·김태년·박병석·김춘진·김영주·이상민·이경숙·최용규·전병헌 의원 발의)	31
39.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정청래·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31
4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정청래 의원 발의)	31
4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1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정청래·우상호·이경숙·민병두·강혜숙·권선택·윤원호·안민석·이계진·김재윤·천영세·박기춘·노웅래·이미경 의원 발의)	31
43.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이재오·이규택·남경필·권경석·박형준·이재웅·이주호·박재완·김재경·안홍준 의원 발의)	31
44.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31
4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52.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서재관·이은영·강기갑·김태환·이규택·우윤근·오제세·김우남·이상득·안홍준·김태홍·이상민·조일현·이정일·한광원·박홍수·강창일·김효석·유선호·최인기·우원식·주승용·신중식·이원영·이시종·이상배·이상열 의원 발의)	33
53.	內水面漁業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54. 水上레저安全法改正法律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 · 김양수 · 김재원 · 이철우 · 정문헌 · 강재섭 · 이성권 · 원희룡 · 이상득 · 권오을 · 황우여 · 정화원 · 정병국 · 이인기 · 신중식 · 김영덕 · 이계경 · 이재웅 · 이주호 · 이재오 · 이종구 · 박형준 · 김희정 · 박재완 · 정중복 · 이군현 · 이영호 · 허태열 · 김기현 · 안상수 · 김우남 · 서병수 · 한광원 의원 발의)	34
55.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4
56.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4
57. 公有水面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4
58. 公有水面埋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4
59.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오시덕 · 이해봉 · 배기선 · 정두언 · 유기준 · 유승민 · 지병문 · 장복심 · 박찬석 · 박재완 · 윤원호 · 김교홍 · 이상열 · 서갑원 의원 발의)	36
60.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1.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6
62.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37
63. 廢鑛地域開發支援에 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37
64. 중 ·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37
65. 入養促進및節次에 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고경화 · 심재철 · 이승희 · 정두언 · 노웅래 · 윤건영 · 안명옥 · 이상배 · 전재희 · 김양수 · 이군현 · 김영덕 · 진수희 · 임태희 · 정화원 · 손봉숙 · 제종길 · 이근식 · 노현송 · 이원영 · 정청래 · 장복심 · 정문헌 · 이경재 · 배일도 · 김석준 · 강재섭 · 김영춘 · 이인기 · 허태열 · 현애자 · 유승민 · 권영길 · 허천 의원 발의)	41
66. 應急醫療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41
67.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41
68.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41
69.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41
70. 醫療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41
71.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최규성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이기우 · 한병도 의원 발의)	41
72. 公衆衛生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7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74. 야생동 · 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75. 大氣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76. 水質環境保全法 全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77.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노현송·양형일·우원식·원혜영·장복심·제종길·조정식·최규식·홍미영·김영주 의원 발의)	44
78.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김영주·조정식·장복심·우원식·김형주·김우남·이인영·장향숙·이목희·박홍수 의원 발의)	44
79.	水道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김영주·조정식·우원식·김형주·제종길·김기석·노용래·노영민·장경수·이목희·김태년·이시중·김혁규·김맹곤·김교홍·이상락·선병렬 의원 발의)	44
80.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낙순·김영주·김형주·노영민·우윤근·장복심·조일현·조정식·제종길 의원 발의)	44
8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조정식·장복심·우원식·김형주·제종길·박홍수·배일도·이덕모·단병호·공성진·이인영 의원 발의)	44
82.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83.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김형주·노영민·노용래·제종길·조정식·김태년·김기석·김재운·송영길·오영식·김영춘·정두언·이낙연·이인영·배기선·박상돈·이호웅·권선택·이철우·김태홍·최재성·이목희·최철국·염동연·이상락·홍준표 의원 발의)	46
84.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오시덕·최재성·송영길·정성호·노현송·이근식·이상락·강혜숙·박순자·이해봉·서재관 의원 발의)	46
85.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배일도·우원식·장복심·엄호성·장향숙·제종길·김영주·원혜영·김부겸·안민석·유정복·정병국 의원 발의)	46
86.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8
88.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8
89.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강혜숙·김기현·김덕규·김영덕·김재홍·노용래·박성범·박순자·엄호성·유시민·이근식·이상득·이상락·이철우·임종석·정문헌·정성호·최인기·최철국 의원 발의)	48
90.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김태홍·장기정·신중식·김영춘·김우남·지병문·염동연·백원우 의원 발의)	48
91.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우윤근·이낙연·이호웅·김동철·김기석·장복심·김우남·김맹곤·염동연·김효석·최인기·배일도·최철국·신중식 의원 발의)	48
9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안상수·유기준·김재원·안경률·박재완·이재오·이해봉·엄호성·전재희·황우여·이인기·정성호·장복심·김양수 의원 발의)	48
93.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8
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50
99.	特殊教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50
100.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50
101.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0
102.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0
103.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0

46.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2
47.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2
48. 가축전염병예방방법중개정법률안(안병엽 의원 대표발의)(안병엽 · 조일현 · 한광원 · 오시덕 · 이철우 · 신중식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의원 발의)	52
49.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오시덕 의원 대표발의)(오시덕 · 조일현 · 한광원 · 이철우 · 신중식 · 안병엽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 정청래 · 선병렬 · 김재윤 · 강혜숙 의원 발의)	52
50.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 · 한광원 · 오시덕 · 이철우 · 신중식 · 안병엽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 김낙순 · 우원식 · 장항숙 · 노영민 의원 발의)	52
5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 · 안상수 · 유기준 · 김재원 · 안경률 · 박재완 · 이재오 · 이해봉 · 엄호성 · 전재희 · 황우여 · 이인기 · 정성호 · 장복심 · 김양수 의원 발의)	52
104.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0
105.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0
106.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가유공자에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홍창선 · 김명자 · 박찬숙 · 홍미영 · 정두언 · 유승민 · 이상락 · 김태년 · 안상수 · 심재덕 · 김낙순 · 엄호성 · 김재홍 · 한화갑 · 황우여 · 우제창 · 이재오 · 정성호 · 엄동연 · 이해봉 · 안병엽 · 김영덕 · 이종걸 · 유선호 · 서상기 · 김석준 · 백원우 · 김영춘 · 노현송 · 진수희 · 이원영 · 강성종 · 오제세 의원 발의)	61
107. 한국투자공사법안(정부 제출)	61
108. 調達事業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 · 노영민 · 최인기 · 김재홍 · 송영길 · 류근찬 · 양형일 · 이정일 · 김희선 · 이낙연 · 김홍일 · 선병렬 · 김한길 · 나경원 · 김태홍 · 한화갑 · 최성 의원 발의)	61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선출안(의장 제의)	68
10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정세균의원 대표발의)(정세균 · 원혜영 의원 외 149인 발의)	70
110.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72

(16시2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2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무려 108건에 달하는 관계로 회의 진행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인당 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이렇

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역사상, 우리 의정사상 가장 많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회기 연장이나 차수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이 상정된 안건이 오늘 자정 이전에 모두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 되므로 제일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 순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26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정종복 경북 경주시 출신 국회운영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호실차장의 정무직 배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의 명칭을 ‘경비구역’에서 ‘경호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위분류제에 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직무 분석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 분석의 결과인 직무등급의 개념을 도입해서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물정보 수집 방법을 구체화해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한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인물정보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의 주요 내용인 선발 기준, 견습 기간, 임용 예정 직급, 임용 시 고려할 사항 등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위

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3인, 그래서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0인 중 찬성 242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상정을 유보하고 제5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6.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法院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8.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최연희·심재엽·박세환·김재원·이계진·고진화·윤호중·이은영·정문헌·민병두·조일현·이광재·정성호·허천·정몽준 의원 발의)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구논희·김애실·김원웅·김현미·박재완·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경숙·이상경·이원영·이윤성·장향숙·정정래·진수희·한병도·황우여 의원 발의)

10. 家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엄호성·이재오·서병수·김영숙·안명옥·맹형규·이인기·이성권·박성범·이혜훈·김희정·김재경·윤건영 의원 발의)

11.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32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5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張倫碩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시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가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분식회계를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게 2년간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되, 이 중에서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해소한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음,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게 하였고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파산에서 면제 재산의 범위를 넓혀 파산자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 채무를 사전 조정을 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저변제액의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였고 채무자의 변제 기간은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국제적 도산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심판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행정사건을 심판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수행할 지원시설이 부족

하고 지원시설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였으나 감치처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양육자에게 감치처분을 내릴 경우 오히려 양육에 공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국심사 시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사증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보호외국인의 보호 및 계호에 있어서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울러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계구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테러범 등 출입국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승객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法院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법제사법위원장)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家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
(○남경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말씀하세요.

(○남경필 의원 의석에서 - 해당 장관이 배석하지 않아서 올 때까지 진행을 잠깐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확인을 하고 지금 사무총장과 의사국장께, 해당 장관이 지금 안 보인다, 빨리 찾아서 참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2시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가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니까 아마 장관들께서 그 시간을 달리 활용한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그래서 지금 빨리 오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진행하면서 장관들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넘기면 또 원내대표들 간에 임시국회 소집 문제까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니까, 사회를 보는 저도 상당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남경필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요, 표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대로 표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1996년

12월에 법무부가 그 시안을 마련하여 98년 11월에 법안이 발의되어 5년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2003년 12월에 기업들에게 분식을 정리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여야는 물론 정부 및 재계와 합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 발의된 후 기업들 스스로 과거 분식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과거의 분식을 정리할 유예기간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개정안이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명성과 이를 통한 국가의 대외신인도 상승이라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요약컨대 이 법은 무엇보다도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인적인 소송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의 주요 집단소송 대상인 증권 관련한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목적은 바로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2년간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일을 2년간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원래 이 법이 제정된 목적에,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사실 지난 5년여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분식회계를 털 것은 다 털었습니다. 아직도 털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새로운 분식을 통해서 과거 분식을 털지 못하는, 즉 그동안에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불량기업들입니다. 이 불량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해서 우리 국가경제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개정안대로 2년의 역분식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할 때 지금 이 대상 기업들에서 앞으로

2년간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역분식 방법으로도 이 과거 분식을 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제안 취지가 원래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 이 법 자체가 갖는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또 누가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법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데 대해서 2년간 유예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 방법은 역분식밖에 없고 그 역분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허위공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위공시를 통해 가지고 2년간 허위공시를 하도록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허위공시를 통해서 기업은 2년간이라는 시간을 벌지 모르지만 그 허위공시 때문에, 그 허위공시에 속아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그 손실은 과연 누가 또 구제할 것입니까?

저는 이 법안이 2003년 12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단 3명의 의원만이 반대한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김무성 사무총장님, 김원기 국회의장님, 제 바로 뒤에 있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다 찬성했습니다. 당시에 이 법은 현행법대로 1년의 유예기간만 주면 충분하다고 얘기한 분이 지금 교육부총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에, 도대체 무엇이 변화하였기에 오늘에 와서 이 법을 다시 뜯어고쳐서 대외 신인도를 2년간, 대외 신인도 추락을 감수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바로 얼마 전에, 2월 초에 우리나라 검찰이.....

마이크 조금만 넣어 주십시오.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

지금 검찰이 현대전자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1조 8000억이라고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

다. 현대전자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7007억 원을 대출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4조 3000억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전자의 당시 임원들은 이 중에서 436억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 과거 분석 때문에 은행이 떠안은 부실 채무는 1조 4880억입니다. 이것은 또 공적자금으로 해서 국민의 혈세로 다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설날 등 명절 때 임직원들의 격려비로 쓰여짐과 동시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자금이 현금으로 대량 인출된 뒤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과거 분석회계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눈물을 흘렸는가? 결국 부도덕한 기업인과 극소수의 일부 부정직한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았고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일을 2년간 더 계속하시렵니까?

저는 이 16대, 최악의 국회라는 16대 국회에서 그나마 마련한 이 개혁 법안이, 개혁 법률이 사상 최대의 물갈이를 했다는 제17대 국회에서 계약으로 귀결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16대 국회의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이 법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애실입니다.

저는 오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개정을 논의하다가 안타깝게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제가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재정경제

부에서 제시한 보완방안을 포함시킨 것인 만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그 적용을 법 공포일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일 이전의 과거 분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회계의 속성상 과거 분석이 현재 회계에도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법안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분석에 대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업 규모에 대한 차별적 유예기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 분석 해소를 2조 원 미만 기업과 동일하게 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업의 과거 분석회계 문제는 기업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기업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중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차별 없이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분식회계에 대한 완전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2조 원 이상 기업에도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2년간 과거분석에 대해서 주자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여 경제 살리기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김애실 의원, 시간을 알맞게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지금 들어오시지요.
 이석현 의원 투표하셨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두 분이 하러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기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4인 중 찬성 201인, 반대 42인, 기권 11인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4인 중 찬성 251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3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5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6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인으로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2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4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시59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4항 민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재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법사위 최재천 의원입니다.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호주에 관한 규정과 입적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할 때 부모의 협의에 따라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동성동본금혼제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시켰습니다.

넷째,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6개월간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섯 번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제소권자를 부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확대하는 한편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여섯 번째,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민법 중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호주제 폐지 등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법 이념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친족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심사숙고를 거쳐 마련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법제사법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議員**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호주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정서이며 문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며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며 개혁이 아니라 최악의 개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호주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호주의 권한 자체를 없애 왔습니다. 현행법상 호주는 가족편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밖의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호주제가 있다고 해서 양성평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성과지도 바꾸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재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의 성이 바뀌었을 경우 혈통상 사촌 심지어 형제자매가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 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결혼이라도 하려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과 본까지도 부모가 합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혈통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성과 본이 다르게 되어 친족관계 질서가 파괴됨은 물론 혼인질서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대단한 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론자들과 현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성 마음대로 바꾸고, 김씨 할아버지, 박씨 손자 만드는 것이 여성인권 향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성차별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가치를 무너뜨리고 가족제도까지 모두 무너뜨려야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부 여성들은 호주제 폐지만이 능사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파괴행위에 대해 앞장서서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 역시 표만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못난 남성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반대하는 의원들조차 줯대도 없고 소신도 없이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죄송합니다마는, 불편한 것 달고 다니지 말고 떼 버리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주장에 휘말려서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망국적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우리의 가족을 해체하고 도덕과 윤리마저 무너뜨린 치욕적인 국회로 남지 않도록 속으로만 반대하지 말고 표로 반드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손봉숙입니다.

제가 지금 김용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선동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통에는 현행 민법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호주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호주제는 단지 일제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념적으로는 한 가족이 가장인 호주에 대하여 복종하듯이 천황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가족의 계통을 용이하게 추적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하거나 불복종했던 가문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 외래로부터, 그것도 강압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현존 민법상의 가(家)라는 것은 실제 가족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2003년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양가의 부모와 모두 따로 사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3세대 가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에서 실종된 호주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도 핵가족 중심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제와 가족의 해체를 연결 짓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호주제가 뿌리를 내려왔지만 이미 세 가족당 한 가족이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 중 19만 5286명이 가족폭력의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호주인 가장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호주제의 존치가 오히려 가족 간 갈등

을 양산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화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는 이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폭력사건이 아니라 개입할 수 없는 가정사라는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의식은 호주인 남편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과 관련해서 다섯 가족 중 한 가족은 남편의 부모 부양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 부양문제로 인해서 부부간 갈등과 형제간의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가족의 비율도 1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네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호주제가 과연 가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부가 2003년에 실시한 가족조사에서는 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개별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질문의 91.6%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라는 것이 각 가(家)를 편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실체라고 한다면 호주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해서 가정사를 돌보아 왔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랑으로 묶인 각 가정을 쉽사리 떠나거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주제는 단지 이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을 취득하기 쉽게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하는 현행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결혼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호주제하에서는 여성과 자녀는 호, 불호를 묻지 않고 남편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부가에 입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풍조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가에 입적한 자녀의 경우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가족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아버지와 사는 경우는 부녀관계가 되고 어머니와 사는 경우는 동거인으로만 기재토록 강제하며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호주제의 실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 9월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시작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 온 호주제 위헌소송이 지난 2월 3일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족보나 가문의 말살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리도 아닙니다. 조화롭고 균형된 가족의 모습을 기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양성이 함께 책임지는 가족, 양성평등 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입니다.

오늘 민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방금 논쟁이 되고 있는 가족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은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사회현상이 바뀌거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때는 얼마든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기본법이나 특히 많은 역사성을 가지고 사회질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갖고 연결되는 사회현상을 규정하는 법을 개정할 때는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이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족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결론을 다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우

리나라의 가족제도를 극히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족제도와 족보학에 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의 와그너 교수, 영국의 케이지 교수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가족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토인비 같은 분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한국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평가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호주에 관해서 많은 역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사실상 삼국시대부터 유래되는 우리 가족제도이고, 근대적인 가족제도가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일제시대 때 의용민법은 재산법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가족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습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일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주장하는 것 중에서 호주제와 관련된 문제와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권은 옛날에는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었고, 또 거소지정권이 있었고, 혼인동의권이 있었고,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 그 권한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은 기껏해야 자기 가족의 거가동의권, 자기 직계혈족의 입적권 정도가 고작 지금 남아 있는 권한입니다. 거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없앤다면 그것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주제 문제는 어쨌든 제가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의 성을 따르는 원칙만큼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남녀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남녀평등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항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781조에서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 하는 원안을 고쳐서 모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 어떤 개정안 중에는 “그러나 그 자녀들 간에 성을 달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아들 둘을 낳을 경우에 하나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하나는 어머니 성을 따른다고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형제자매간에 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질서에서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잘 조정을 하면 자녀는 하나의 성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는 사촌간에는 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간에 있어서 그 아버지 성도 아닐 것이요, 저쪽 사촌의 작은어머니나 큰어머니의 성도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촌간에 성이 달라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촌간에 하나는 김씨 중친회를 하고 하나는 박씨 중친회를 합니다. 사촌간에 하나는 김씨 족보에 오르고 하나는 박씨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런 인간의 성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성도 일본의 성도 결혼을 하면 그 부인이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남녀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해도 처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성의 원칙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의 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남녀평등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식으로 해서 모의 성을 따른다로 바꾸고 싶지만 지금 부의 성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기존질서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모의 성으로 바꾼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성이 바뀌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의원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여성단체에 가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그 여성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제 얘기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절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908조의 친양자제도에 의해서 이혼한 여성이 데리고 간 자식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문제,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혼을 해서 데리고 간 애가 새 남편과 낳은 자식과 성이 달라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로 울고 끌린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애달픈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령 부모 간에 낳은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살고 하나는 이혼한 어머니가 데리고 이씨네 집으로 재혼해서 갑니다. 그러면 애는 계부의 성을 따라서 이씨가 됩니다.

아까는 아버지의 성이 달라서 데리고 간 애는 김씨이고 새 남편과 낳은 애는 이씨가 되어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김씨이고 하나는 이씨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이 경우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김씨가 되고 하나는 이씨가 됩니다.

애들이 커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데 하나는 김씨이고 하나는 이씨가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성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제에 관한 것, 하나는 781조에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 이 2개가 위헌신청이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린 것은 호주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제가 아는 헌법재판관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그 헌법재판관들의 대부분은 그 문제는 위헌문제가 될 수 없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에서 호주제에 관한 것은 통과시켜 주지만 부의 성을 따른다는 조항은 보류해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나중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이것을 오늘 표결을 한다고 하면 부득이 반대로 투표를 해 주시고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가족제도가 붕괴할 위험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을 제외한 다른 발언은 의장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 의원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주축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에 호주제를 포함한 일부 조항은 1958년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47년 이상 학계와 여성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리는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여전히 호주제는 남아 선호 사상을 온존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임신중절로 한 해에 3만 명 이상의 여자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셋째 아의 경우 여아 100명당 남아가 141.4명에 이르는 등 성비 불균형이 사회문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의 근저에도 호주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세 쌍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

주제 존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이 해체된다고 합니다. 이는 호주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호주제가 없어진다고 가족 붕괴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72%에 이릅니다. 이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주제가 우리의 가족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호주제로 인해서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족 해체의 예방과 건강한 가정의 육성은 민주적인 가족문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이해, 국가 차원의 완벽한 보육 지원, 철저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호주제가 없이도 우리보다 낮은 이혼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혼가정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생부의 성을 강제하는 현행 민법 규정 때문에 많은 재혼가정의 가족들이 성문제를 놓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어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동거인에 머무는 것이 현재의 호주제입니다.

따라서 여성 강제주의를 여성 원칙으로 바꾸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하여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제는 여성뿐 아니라 이혼가족, 재혼, 한 부모 가족 등 남녀를 떠나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겐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자녀의 성 변경을 인정한다면 근친혼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호주제도에 있어서도 이종과 고종사촌 간은 어차피 성이 다르므로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이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면서 자동연결 검색하도록 하면 됩니다.

호주제 폐지문제는 여성과 유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기초인 가족생활과 관계를 평등한 가치와 관습으로 바꿀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에서 남자가 우선한다는 생각,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딸만 있는 전국의 230만 가구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 끊어진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문제는 이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성을 무조건 부성을 따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성조향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부성강제조향에서 부성원칙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부성강제조향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가정이 상호평등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8인, 기권 16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代案)(정무위원장 제출)

13.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정무위원장 제출)

14. 參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5.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31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전병헌 정무위원회의 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 및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반민족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 내의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우선 배려토록 하고,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귀국하는 경우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서 유족 중 1인에 한해 지급하던 정착금을 유족 중 각 세대주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19혁명부상자회의 명칭을 4·19 민주혁명회로 변경하고, 유족들의 단체 참여 기회를 일정 부분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의 지회 설립을 자율화하고, 국가유공자단체장의 선출시 보훈처장의 승인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은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 목록을 추가

하고, 참전사실 확인기관에 경찰청장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은 공단의 사업 대상에 보훈정책의 연구,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제대군인의 사회복지지원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심사 조정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통합·일원화에 따른 법률조항의 정비가 주요 목적입니다.

9쪽짜리 심사보고 내용을 3쪽짜리로 줄여서 말씀드린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정무위원장)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정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5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4인으로서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 割賦去來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양수·유승민·엄호성·정종복·나경원·박찬숙·임태희·진영·이승희·이상경 의원 발의)

20.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낙순·김영춘·김원웅·박명광·신학용·우제창·우제항·윤호중·이근식·이상경·채수찬·최재성 의원 발의)

21.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박형준·김양수·이계경·권철현·이성권·박승환·안홍준·정병국·유기준·김희정·정종복·심재철·김석준·정장선·박재완·손봉숙 의원 발의)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송영길·홍창선·김명자·장영달·노현송·이원영·최성·문학진·신기남·조경태·강혜숙·정청래·장향숙·우원식·주승용·신중식·장복심·이인기·이광철·서갑원·김동철·김영주·이인영·이상경·박명광·조배숙·정장선·김재홍·한병도·이근식·염동연·안영근·강창일·복기왕·김영춘·임종석·한명숙·원혜영·정성호·문석호·구논희·김형주·김태홍·최재성·백원우·지병문·우상호·민병두·이철우·김춘진·우제항·오제세 의원 발의)

(17시41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17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6건에 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문학진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문학진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및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割賦去來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정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 존 함)

.....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문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8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
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3인, 기권 3인
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韓國國際交流財團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
출)**

**24. 在外同胞財團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50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23항 한국국
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재외
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2
건에 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소속 이화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
안과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국제교류기금
의 여유 자금을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 개정법률안이 예산 부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됨으로써 절차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임을 지
적하고,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재단의 안정적 사
업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韓國國際交流財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在外同胞財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이화영 의원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2인, 기권 1
인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8인, 그래서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6.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
장 제출)**

(17시53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
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
96항부터 제98항까지를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송영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장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고,

둘째, 법무장교가 군 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 시보로 실무 수습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셋째, 군사관학교 생도가 외국 장교양성학교 수료 후 국내 교육과 국외 교육을 합하여 5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 초임계급이 소위로 임관되어 있던 것을 중위로 임관되도록 하였고,

넷째,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박사과정수료자의 장교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위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보직 해임 시 당사자의 권익보호절차로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고,

여섯째, 현재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군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정하에서는 심사의 전문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인이 아닌 인사들을 포함하여 소청심사위원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독립적·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명예 전역 후 공직에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고 있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었고 법률에 그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바, 그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국방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7.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김명자 의원 발의)
(김명자 의원 외 56인 발의)

98.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
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장영달·김명자·김명주·김영덕·김용갑·김종률·김태홍·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학진·문희상·박순자·박재완·신국환·신기남·신중식·심재덕·엄호성·오시덕·오제세·유재진·이근식·이낙연·이상득·장윤석·정성호·조성태·최연희·최재성·황우여 의원 발의)

(17시58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9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명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미필 인력자원이 출국할 때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귀국보증제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1962년에 도입된 귀국보증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이 중복·과도한 규제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31일에 공포된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감안해서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2005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영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인으로서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26.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27.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28.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29.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1.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우제항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경기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선심성 해외훈련의 남발이 우려되고, 교육훈련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과 지방의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 비율, 경영 성과 등을 감안하도록 후단을 신설하여 위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상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지난해 12월에 공포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일에 맞추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을 발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사태 수습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판단·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시 발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권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북 5도민의 정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북 5도의 관장사무에 자유 민주주의의 함양 및 안보의식의 고취와 이북 5도민에 대한 제 증명 발급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항은 상속의 법리에 어긋나고 악의의 양도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동조 제5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김덕규 의장직무대리,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팀장제의 도입, 여성가족부의 개편, 청소년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규정은 삭제하며,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려 했던 건설교통부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박희태 우제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7건을 차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정정 요구를 하시면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요」 하는 의원 있음)

전부 다 정정 요청을 받아들여서 의사록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지금 100몇 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8인, 반대 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이번에는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5인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7인 전원 찬성으로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許泰烈 議員 의석에서 - 이름은 들어 왔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요!)

허태열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許泰烈 議員 의석에서 - 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여기도 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속력이 너무 빠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쫓깁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1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4인, 기권 5인으로서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으로서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52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基礎科學研究振興法中改正法律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창선·공성진·안병엽·전여옥·진영·엄호성·권영세·김명자·권선택·김태환·김재경·심재철·우윤근·김성곤·오시덕·황진하·유재건·이용희·김무성·조배숙·배기선·정의용·허천·황우여·이석현·김희선·정세균·박진·원희룡·김부겸·윤호중·김한길·양형일·박상돈·최인기·이운성·권오을·이군현·서갑원·권철현·김효석·김기현·이정일·이낙연·김기석·고홍길·이인기·이광재·신학용·박종근·박순자·김영선·제종길·이계진·최성·최재천·장영달·조정태·신국환·이강래·이병석·강기정·박계동·이상열·염동연·안영근·김맹곤·곽성문·김태년·유승민·안상수·이원영·김병호·김양수·이상배·이종구·정갑윤·이상경·정병국·한화갑·김원웅·최재성·류근찬·주성영·원혜영·강재섭·김애실·오제세·이시종·안택수·허태열·정성호·진수희·김낙순·김영춘·김석준·김문수·김광원·이미경·이경재·배일도·박찬석·김진표·이상득·강성종·박병석·김형오·이강두·임태희·맹형규·유승희 의원 발의)

3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유승희·구논희·제종길·노웅래·이화영·선병렬·우윤근·김태년·김진표·이영호·권선택·우원식·한광원·백원우·조정식·윤호중·노영민·이계안·문석호·전병현·이종걸 의원 발의)

34.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35.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재완·박순자·황우

여·정종복·권영세·김희정·이인기·이성권·진영 의원 발의)

36. 郵便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7.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시18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2항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우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존경하는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徐相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12인이 발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내 최고 과학기술 분야 석학 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그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반 산업현장과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실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연구 주체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주체의 장에게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원자력시설, 중화학시설 및 교량 등 비파괴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이 타당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편역무이용자의 권리를 보호·강화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보다 젊은 인적 자원이 별정우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연령을 조정하고 별정우체국연합회 운영경비의 사용한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基礎科學研究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郵便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1인, 반대 9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

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0인 전원 찬성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우편법중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반대 8인, 기권 3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大韓民國藝術院法中改正法律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임종인·안민석·우상호·배기선·김태년·박병석·김춘진·김영주·이상민·이경숙·최용규·전병헌 의원 발의)

39.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정청래·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4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정청래 의원 발의)

4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4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정청래·우상호·이경숙·민병두·강혜숙·권선택·윤원호·안민석·이계진·김재윤·천영세·박기춘·노웅래·이미경 의원 발의)

43.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이재오·이규택·남경필·권경석·박형준·이재웅·이주호·박재완·김재경·안홍준 의원 발의)

44.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4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30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이상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우상호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예술원법은 예술원 회원 자격을 대학졸업 여부에 따라 예술경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 원로로서의 모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술경력 30년 이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콘텐츠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단속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내용의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필요

성이 인정되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설치법이 한시법인 점과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기금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고액 배팅 및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및 그 광고 문안에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하여 원안의 취지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이원화된 청소년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존중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자격 범위에 초·중등학교의 교원을 추가함과 아울러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 근무 경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선 청소년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大韓民國藝術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법안 중에 우선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반대 5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2인, 기권 6인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재희 의원님, 안 하셨습니까?

(○전재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전재희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예, 전재희 의원님 찬성으로……

투표 결과는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윤성 의원님, 찬성입니까?

(○이윤성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1인, 그리고 이윤성 의원님도 찬성한 것으로 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식사 문제는 지금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잠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2.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서재관·이은영·강기갑·김태환·이규택·우윤근·오제세·김우남·이상득·안홍준·김태홍·이상민·조일현·이정일·한광원·박홍수·강창일·김효석·유선호·최인기·우원식·주승용·신중식·이원영·이시중·이상배·이상열 의원 발의)

53. 內水面漁業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8시42분)

○부의장 박희태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52항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53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남 강진·완도 지역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태풍이나 해일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행하

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을 “어업재해”로 개정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내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행 지원제도가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해를 입은 어가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원상복구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복구에 준하는 지원비 지급 대상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수면 어업법 일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어업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어업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관련 규정은 내수면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법에 수용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낚시 등 놀이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에 대한 제한권을 현지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증식 보호 및 유어(游漁)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內水面漁業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4. 水上레저안전법改正法律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김양수·김재원·이철우·정문헌·강재섭·이성권·원희룡·이상득·권오을·황우여·정화원·정병국·이인기·신중식·김영덕·이계경·이재웅·이주호·이재오·이종구·박형준·김희정·박재완·정중복·이군현·이영호·허태열·김기현·안상수·김우남·서병수·한광원 의원 발의)

55.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6.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7. 公有水面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8. 公有水面埋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시48분)

○부의장 박희태 그러면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4항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박승환**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박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3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등록 및 안전검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검사 및 대행 기관 지정의 주체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내수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선원에 대한 선원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선원에게도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해서 선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선원법의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자가 승무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과 방치 폐선의 직권 제거에 관한 사항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을 지방 이양 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매립

의 경우에 공공의 용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水上레저안전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船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公有水面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公有水面埋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박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심사보고해 준 법안 중에서 먼저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전원 찬성으로서 선박직원법중개정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최철국 의
원 대표발의)(최철국·오시덕·이해봉·배기
선·정두연·유기준·유승민·지병문·장복
심·박찬석·박재완·윤원호·김교홍·이상
열·서갑원 의원 발의)

60.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
출)

(18시55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해외
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전
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전기
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 나오

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김태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먼저 최철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화 및 자본시장 개방 등
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
해 설립된 국내 기업이면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 법인이나 외국 정부에
속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우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
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각종 문서의 기록·보관 및 비치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
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문
서의 보관·증명 등을 수행할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정비하
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 전자문서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
는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선언적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는 제4조 단서를 별도의 항으로 분
류하고,

둘째, 전자문서의 보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서 법률에서 요구하지는 않으나 사인 간에 주고
받는 전자문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23조(전
자문서 이용의 촉진)에 제2항을 신설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
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안
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인
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안전인증 근거조항에서 그 면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검사제도의 중요성 및 차이점을 고려하여 실시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였으며,

둘째, 안전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의 이행 주체를 제조업체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 변경하여 정기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주체 및 설립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김태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1인, 기권 3인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2인 전원 찬성으로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63.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6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19시02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이병석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을 단축해서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둘째,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제조시설 증설절차를 기존 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시설교체가 금지되는 경우 동일 규모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과의 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대폭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며,

셋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인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범위에 대한 오해가 많아 그 범위를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호텔 숙박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당해 이익금의 납부 기준을 100분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법이나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건설, 운영 및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셋째,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공사입찰자격 및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

과,

첫째, 유치지역 선정 절차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등 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원금의 규모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셋째, 처분시설부지 내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廢鑛地域開發支援에 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산업자원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2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출신의 조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정부의 원안에 비해서 주민투표의 절차와 그리고 지원금의 성격을 사업자가 담당하게끔 하는 등 많은 부분이 진전된 내용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확보 사업에 실패한 것은 돈의 문제나 혹은 또 절차의 문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의 신뢰성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의결 처리하고, 그리고 산업자원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폐기장 부지 확보 문제를 돈 문제로 다시 접근하려고 하는 정부의 거듭된 실패의 정책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폐기장 부지 확보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원금이 우선될 경우 안전성보다는 이를 유치하려는 지역의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전성 확보는 논란의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다음 부지 확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지리적 여건 또 지형·지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울진, 경주, 기장, 영광 지역의 핵발전소와 서울 공릉동에 있는 ‘트리마크’라는 연구용 원자로,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등 전국적으로 2000여 곳이 넘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송선의 운항과 입항하기 좋은 조건과 육상운송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지역이 과연 유치를 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신뢰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성이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기, 수렴 주체, 수렴 방법 등의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또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투표의 방법과 지역주민들이 핵폐기장이 입지하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법안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은 단순히 설명회·토론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경우 주민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동안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청와대 지속가능위원회, 열린우리당 통합실천위원회, 산업자원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2004년 9월 14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중·저준위 분리 정책으로 인하여 이 법안은 그간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떠한 논의의 진행도 없이 법안의 일방적 관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이라며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독선이라며 지역단체와 시민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단체가 대안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대안의 구체화까지 내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만을 강요해 온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은 그동안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확보 사업에 3000억 원의 지원과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현 정부의 포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3000억 원을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에 지원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고준위 폐기물과 폐원자로의 처리 시설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또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유로 이 특별법안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들께서 그렇게 반대한다면 우리의 원자력 정책 또 폐기물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 전력 정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근원적인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U의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정책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다시 원자료를 발주한다는 등의 산자부의 보고는 있지만, 그것은 다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폐쇄 정책은 분명한데 원자력으로 우리 후세대에 엄청난 불안감과 부담을 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이미 선진 국가들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만 유독 2012년 설비 예비율 40% 가까운 무한도의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오늘 이 반대의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많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 혹은 가능한 한 많은 반대표를 주셔서 정부의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후세대들이 무한정의 책임을 지는 이 잘못된 정책을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조승수 의원 육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넣으세요.)

지금 5분으로서 오늘 토론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사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다가?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0인 중 찬성 140인, 반대 21인, 기권 9인으로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회기의 마지막 날이고 차수 변경도 안 됩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직 많은 관계로 별도의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반대토론은 5분이 아니고, 아까도 5분 해 가지고 조금 더 연기되는 것은 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렸고 이 의사 진행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은 5분으로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오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만, 교섭단체만 합의해서 됩니까?)

(○심상정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사당이 자꾸 공석이 많이 생깁니다.

의원님들 의석 상황을 좀 봐 가면서 급한 일을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많은 법안을 올려놓고 반대토론 시간을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결국 국회가 줄속 처리하고 날치기 처리한다고 하는 비판을 어떻게 모면할 것입니까?)

조승수 의원의 토론 시간은 우리 계시원이 처음에 시간을 가도록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오버타임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농해수 법안에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분으로 제한하면……)

오늘 또 투표도 있습니다. 오늘 인권위원 선임투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고경화 의원 대표발의)(고경화·심재철·이승희·정두연·노웅래·윤건영·안명옥·이상배·전재희·김양수·이군현·김영덕·진수희·임태희·정화원·손봉숙·제종길·이근식·노현송·이원영·정청래·장복심·정문헌·이경재·배일도·김석준·강재섭·김영춘·이인기·허태열·현애자·유승민·권영길·허천 의원 발의)

66.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67.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68.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69.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

발의)(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70. 醫療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71.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강기정·최규성·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이기우·한병도 의원 발의)

72. 公衆衛生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시22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기우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입양 촉진을 위하여 부모의 친권행사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친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요보호아동을 양자될 자격에 포함시키거나 후견인

의 입양 동의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한편, 입양기관이 입양 알선에 필요한 비용을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현행과 같이 존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10월 12일을 입양의 날로 신설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의 달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5월 11일로 그 일자를 변경하였고, 동 법안의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이 시행되도록 부칙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양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입양 주관을 신설하며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제기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한편, 입양기관이 친부모나 직계존속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알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 종사 명령과 응급환자 이송 명령권자를 현행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의 제조·가공업, 운반업 및 식품 접객업 등의 영업신고에 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이양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대한 치료 지시 및 강제처분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주거지가 불분명한 감염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도 포함하도록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의 병원인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조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설치·폐지 등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사무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시·군·구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등의 개설 허가,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의료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조정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허가기준 유지 및 지역 간 분포 등을 감안하여 동 사무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의료기관 등의 폐업·휴업신고 사무 등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 사무 및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사무를 시·도지사의 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조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광역적·통일적인 예방조치를 위해서 시·도지사도 계속해서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소독업의 신고,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영업의 정지 명령 및 그에 관한 청문 등에 관한 사무는 개정안과 같이 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과 김태환 의원, 이호웅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동 4건의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목욕장업에 찜질서비스 영업을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둘째,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

화하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셋째,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도지사가 행하던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사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는 등 사무의 주체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入養促進및節次에 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應急醫療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보건복지위원회)

公衆衛生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보건복지위원장)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한 분 더 투표하셔야 되는데……

김 장관,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전원 찬성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료한다는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전원 찬성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이들 법안들은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권한을 국가 또는 시·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에서 6월이 경과하는 날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大氣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水質環境保全法 全部改正法律案(代案)
- (환경노동위원장)
-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水道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두 분 의원 들어오시는데 투표해 주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우리 강 의원께서 투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이므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2인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 · 김형주 · 노영민 · 노용래 · 제종길 · 조정식 · 김태년 · 김기석 · 김재운 · 송영길 · 오영식 · 김영춘 · 정두언 · 이낙연 · 이인영 · 배기선 · 박상돈 · 이호용 · 권선택 · 이철우 · 김태홍 · 최재성 · 이목희 · 최철국 · 염동연 · 이상락 · 홍준표 의원 발의)

84.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오시덕 · 최재성 · 송영길 · 정성호 · 노현송 · 이근식 · 이상락 · 강혜숙 · 박순자 · 이해봉 · 서재관 의원 발의)

85.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 · 배일도 · 우원식 · 장복심 · 엄호성 · 장향숙 · 제종길 · 김영주 · 원혜영 · 김부겸 · 안민석 · 유정복 · 정병국 의원 발의)

86.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54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82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형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형주** 환경노동위원회 김형주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서 5개의 법안을 일괄하여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 관련 처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취업 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18세 미만인 자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작성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해당금 지급 전에도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쉽게 변경하였고, 부정행위에 의하여 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법안을 심사하면서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를 법률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부 일선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평가 결과 그 이행 상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장애인의 영업 장소를 매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를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요율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참조)

-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도 180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도 또한 183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미처 못 하신 의원께서는 참여하신 것으로 기록에 올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8.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9.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강혜숙·김기현·김덕규·김영덕·김재홍·노웅래·박성범·박순자·엄호성·유시민·이근식·이상득·이상락·이철우·임종석·정문헌·정성호·최인기·최철국 의원 발의)

90.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김태홍·강기정·신중식·김영춘·김우남·지병문·염동연·백원우 의원 발의)

91.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우윤근·이낙연·이호웅·김동철·김기석·장복심·김우남·김맹곤·염동연·김효석·최인기·배일도·최철국·신중식 의원 발의)

9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안상수·유기준·김재원·안경률·박재완·이재오·이해봉·엄호성·전재희·황우여·이인기·정성호·장복심·김양수 의원 발의)

93.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05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87항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병호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병호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8개 법률안 중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건축 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건설교통위원장)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먼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항
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7인 중 찬성 174인, 반대
8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도
시공원법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28인, 기권 6
인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은 건

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0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장대리 박세환 여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성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성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박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9. 特殊教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100.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101.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2.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3.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시20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99항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1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군현 존경하는 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과 이종걸 의원·김영숙 의원·허천 의원·이호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 그리고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이상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건의 법률안 및 원안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신설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담금 부과 대상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 및 목적조항 등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당분간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학생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

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의 보호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特殊教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교육위원장)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또한 188인으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석 193인 중 찬성 또한 193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또한 20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앞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를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7.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가축전염병예방방법중개정법률안(안병엽 의원 대표발의)(안병엽·조일현·한광원·오시덕·이철우·신중식·박홍수·이시중·김우

남·이영호 의원 발의)

49.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오시덕 의원 대표발의)(오시덕·조일현·한광원·이철우·신중식·안병엽·박홍수·이시중·김우남·이영호·정청래·선병렬·김재윤·강혜숙 의원 발의)

50.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한광원·오시덕·이철우·신중식·안병엽·박홍수·이시중·김우남·이영호·김낙순·우원식·장향숙·노영민 의원 발의)

5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안상수·유기준·김재원·안경률·박재완·이재오·이해봉·엄호성·전재희·황우여·이인기·정성호·장복심·김양수 의원 발의)

(20시31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46항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가축전염병예방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명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金命柱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 출신 김명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쌀소득직불제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 양곡의 수급계획과 매입가격 및 매입량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미국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수입 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한 양곡표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회동의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곡정책자문위원회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
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재원 의원 등 21인
이 발의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
출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
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쌀 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
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매년 고정직불금을 지불하
도록 하고,

둘째, 고정직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 가
격 차이의 100분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되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에 관한 기본정책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
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병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
전염병예방방법중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가
축 방역활동을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외에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경우에도 방역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용어의 통일을 기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시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산
물가공산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은 지역적 특색을 바
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전통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농림부장관의 사무인 전통 외식산업
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일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원
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청원
산림 보호직원에 대한 배치권을 시장·군수·구
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으로 확
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법
안심사 과정에서 국립수목원장을 배치권자에서 삭
제하고 청원산림 보호직원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모든 배치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태열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
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목원 조성 시 필요한 경우에
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 명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내용

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법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여
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6개 법
안 중에 첫 번째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두 번
째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은 몇십 년 동안 우리 농정의 기
본이었던 추곡수매 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
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가격 지지 대신에 직불제를
통한 소득 보전을 하는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 안을 잘 심사하셔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훌륭한 법안이 제정되었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
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예방방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
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한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
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쌀농사를 유지하
기 위한 핵심 제도였던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
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로 대체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체하겠다는 쌀소득 보전 대책이 농민들과 농업계의 반발에서도 드러나듯 극히 미봉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쌀소득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강기갑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추곡수매제도는 그동안 우리 농업의 기둥인 쌀가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전체 쌀 생산량의 17% 수준인 500만 석 정도를 추곡수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가을 수확기에 홍수처럼 출하되고 있는 쌀값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추곡수매를 통해 매입한 쌀을 비축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 등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된 세계 농업시장, 우리의 예산 문제로 현재대로의 추곡수매제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농민들 또한 현재까지대로 언제까지 추곡수매제를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최소한 2007년까지 3년 동안은 예산 감축 없이 추곡수매제와 같은 가격 지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 폐지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건부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농민들은 소득보전은 물론이고 영농에 대한 희망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곡수매제의 폐지로 올해 가을 수확기에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의 수매물량인 500만 석 규모를 유지할 수 없고 가을에 쌀은 홍수처럼 출하되고 정부 매입량은 대폭 줄어들어 쌀값 하락과 유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하는 공공비축제는 해당 지역의 시중 쌀값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지역별 소득 격차를 유발하여 또 다른 지역 차별을 야기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쌀값이 낮은 전라도, 충청도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 따른 양곡의 수급 관리에 대

한 국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한편 양곡정책의 중요한 축인 보리는 수매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후속 대책도 전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은 5년 내지 7년 단위로 제정되는 농업법을 통해 쌀을 비롯한 10여 개 품목의 목표가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직접지불금액을 동의제 수준이 아니라 법에 명시할 정도로 국회가 직접 나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미 국민과 국회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농산물은 단순히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판단은 향후 우리 농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농민들이 추곡수매제가 이대로 폐지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농민들의 눈물의 호소가 없더라도 우리는 무너져 가는 농촌을 살려내야 됩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 쌀농사는 무너지고, 쌀농사가 무너지면 우리 국토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쌀의 가치는 단순히 쌀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벼농사로 인해서 33조 원의 부가가치가 있음을 전문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이 벼농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어느 시골에서 30년 만에 아기의 울음이 들렸다고 해서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촌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곡수매제, 완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자급률 법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세워 둔 다음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길어도 그것이 3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추곡수매제, 반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농민들의 목소리, 우리 농촌을 살리려

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 이번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상정된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님이 양곡관리법안의 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또한 심의 과정에 임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쌀 수입이 늘어나고 시장에 직접 판매가 되고 이와 더불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 쌀을 생산하더라도 수확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활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인들의 우려가 보완될 수 있도록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님을 포함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야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다음에 의결할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과 연계된 법률로서,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추곡수매제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목표가격 국회 동의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하에 관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득보전 비율도 정부에서는 17만 원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0%를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중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위

해 85%로 인상하였습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법안 내용대로 하면 앞으로 쌀값이 2003년 대비 5% 하락하더라도 목표가격 17만 원 대비 98.6%인 16만 7000원의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심지어 15% 하락하더라도 목표가격의 97%인 16만 5000원이 보장되어 농업인들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격정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추곡수매제 폐지는 95년 WTO 출범 이후 감축 대상 정책으로 지정되어 매년 줄어들었고, 이나마도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타결되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추곡수매량의 경우 과거 많을 때는 생산량의 3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마는, 현재는 생산량의 15% 내외밖에 되지 않아 수확기 가격 지지 기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추곡수매를 위해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농업인에게 미치는 소득 효과는 1500억 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만약 소득 지지 기능이 미약한 추곡수매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고 쌀 수입 증가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업인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하반기에 예상되는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유통상에 큰 교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위원회 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한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자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농촌 현장을 비롯한 농업계의 여론을 더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계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정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는 1948년에 도입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도에 폐지되었으나 그 후 1988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부활되었습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부활되었는데 이것은 과거 저곡가 정책에 입각한 농정이 살농 정책이라며 농민들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법 개정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곡수매제도는 그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생산비에 채 미치지 못하는 못했지만 쌀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WTO에서는 수매제 같은 가격 지지 정책 축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40여 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과, 그리고 시장가격 매입을 전제로 한 공공비축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농민들을 벼랑 밑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통해서 향후에 쌀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존의 추곡수매를 대체할 제도와 소득 안정 방안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 동의제가 수매 가격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폄하해 왔습니다. 이러한 폄하는 우리 농

민들의 피멍든 가슴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못질을 해 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수매 가격은 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2002년 이후 계속 추곡수매가인하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WTO를 핑계로 가격 지지 정책을 계속 축소하고 있지만 WTO조차 허용하고 있는 직불제 등의 허용 보조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실정입니다.

농업예산 대비 직불예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36%, EU는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를 대신해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 소득보전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공비축제는 매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득 격차만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미합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아직도 감축대상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격 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정부만 자국의 농업과 농민의 미래보다는 WTO 규정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추곡수매 가격으로 추곡수매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곡수매를 폐지하려 한다면 쌀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의 소득 안정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농업계의 입장이고, 그렇게 거듭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곡관리법과 쌀 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 법률안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상심하고 있고 너무나 분노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농업계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법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법안들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17대 국회가 대책도 없는 상태로 농민 구조조정을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이 해 왔습니다. 더 농업 구조조정을 계속 가속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 농민과 농업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안겨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현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한 해 4대 개혁 법안 처리 문제에 여론이 집중되어 있을 때 노동자, 농민들은 각각 비정규직 철폐와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와 단식 농성을 벌였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다른 시위를 벌이기는 했지만 그 문제의 원천은 한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유연화, 민영화, 규제 완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세계화가 전면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고, 농민들은 수입 농축산물의 범람과 개방 농정으로 고향을 지키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땅의 가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9개국과 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WTO에 쌀 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업마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UR 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쌀마저 추곡수매를 폐지하고 소득 보전 대책은 미봉책으로 그친다면 농민들은 어떤 희망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쌀 농가의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는 정부가 쌀 재협상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쌀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도 불분명한 채 쌀값 하락이 몰고 올 농민들의 반발과 농정 실패에 대한 혼란을 일단 무마하기 위한 서둘러 마련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80kg 쌀 한 가마당 목표 가격을 17만 70원에 정해 놓고 목표 가격 대비 시중 가격 하락의 85%를 직불제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소득보전 효과를 넘을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입 쌀의 시중 유통이 증가되고 수입 개방이 확대되어 쌀값의 하락이 본격화된다면 차액의 85%만 보전하게 되므로 기존 소득보전 효과보다 훨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목표 가격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신설하기는 했지만 독소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국회 동의제 자체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향후 목표 가격의 변경 시 쌀 생산비 변화는 물가인상률 변동을 감안하여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쌀 수확기 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개방의 확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쌀 한 가마에 17만 원인 목표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제약요인을 두겠다는 정부 측의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농업계에서는 식량 자급 목표 수준의 법제화를 요구해 왔으며, 얼마 전 새로 취임하신 박홍수 농림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쌀 소득보전 방안엔 먼저 식량의 적정한 자급 목표 수준이 마련되고 쌀 농업의 정책적 목표가 분명한 가운데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쌀 자급률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제도와 농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노동자, 농민, 서민이 겪

는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취약합니다. 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한다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내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법안 내용은 물론이고 졸속 처리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본회의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향후에 농민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저항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 이 농민들과 농업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다시 한번 마련될 수 있도록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최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역시 반대로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렇게 밤늦게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네 사람이 나와서 반대로론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 주신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농민들은 TV를 틀어놓고 이 국회의사당 전경을 눈이 뚫어져라, 귀를 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석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농민들은 '아, 우리 농촌 쌀 문제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민족의 명운이 걸린 쌀 시장 개방 문제로 이 땅 농업, 농촌이 처절히 절규했던 한 해였다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수만 명의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가 하면, 농기계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애써 키운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고, 차가운 도심 한복판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수십 일을 단식농성을 하는 등 민족의 생명인 쌀을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쌀 재협

상 결과를 제대로 완료하지도 못하고 국회와의 협의 과정도 생략한 채 WTO에 우리 측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2004년을 넘기면 관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굴욕적 유권해석을 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헌법 제60조의 국회 동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는 4월에 국회 동의를 구하려 하고 있으나 비판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악의 쌀 협상이라는 협상 결과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하여 그 진상을 먼저 밝혀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재협상 국회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국회 비준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과 농가의 쌀 소득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4월에 다루어질 쌀 재협상 국회 비준안의 통과를 강요하는 입법부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시기적으로 전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께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WTO에서도 앞으로 3년 정도는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유권해석을, 그런 결정을 일반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도는 추곡 수매를 계속하고 쌀소득보전직불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면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강행 처리하고 있는 그 의도에 대해서 많은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정제도 개편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은 농협중앙회, 전직 농림부장관 등 농업계가 나서서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에 따라 2007년 향후 3개년 쌀 한 가마 17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쌀 생산비는 18만 2280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가격이 쌀 농업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WTO가 허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사용한 추곡 수매 예산은 1조 359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까지 감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WTO가 허용한 금액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5년 WTO가 허용하는 예산의 9%, 2006년에는 24%, 2007년에는 38%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소득직불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농업을 옥죄어 오고 있는 WTO조차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0% 정도밖에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계화, WTO를 핑계대서 농업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기만적인 것인가를 농민들이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저는 사실 법안소위 위원이었으며 또 논의에 참여하였지만 법안소위원회에서 저는 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마저 저는 퇴장을 할 수밖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본 의원은 제 심정 같았으면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점거해서 의사봉을 가로막고 몸부림을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께서 제발 국회 싸움질만은 하지 마라 하는 그 강력한 호소와 요구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 야당 의원님들! 이 안이, 4월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되고 나서, 농어촌 회생 연구 모임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의 법안이 지금도 몇십 일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를, 목표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농지법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농지를 유지할 것이고 어느 방법으로 농지를 지킬 것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쌀 소득보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다음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 하자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참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하시고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예,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종료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의사국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허 의원께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인지 찬성이신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126인, 반대 82인, 기권 21인으로서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55인, 기권 15인으로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석 234인 중 찬성 또한 234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또한 233인으로서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4.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5.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1시20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05항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부겸 국회운영위원회 김부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되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말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경제적 압박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위기를 최소화하고자 국가가 체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되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말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개 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먼저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32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6.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
한국가공자예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
안**(홍창선·김명자·박찬숙·홍미영·정두
연·유승민·이상락·김태년·안상수·심
재덕·김낙순·엄호성·김재홍·한화갑·
황우여·우제창·이재오·정성호·염동
연·이해봉·안병엽·김영덕·이종걸·유
선호·서상기·김석준·백원우·김영춘·
노현송·진수희·이원영·강성중·오제세
의원 발의)

(21시24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
항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
가공자예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서상기 의원 나오서
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徐相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입니다.

홍창선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
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가공자예우와지
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04년 8월 발생한 4인승 소
형 항공기 비행 성능시험 중 사고를 비롯하여 국
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연
구자들이 순직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는, 이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시행할 것과 사고의 예방과 사후 보상 조치에 필
요한 비용을 연구개발사업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과 순직한 연구자들의
승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기념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
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현재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가 극히 제한적
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과학기
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건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
가공자예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 심사보
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국가연구개발사
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가공자예우와지
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3인, 기권 2인
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
한국가공자예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은 과
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7. 한국투자공사법안(정부 제출)

108. 調達事業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노영민·최인기·
김재홍·송영길·류근찬·양형일·이정
일·김희선·이낙연·김홍일·선병렬·김
한길·나경원·김태홍·한화갑·최성 의원
발의)

(21시28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107항 한국
투자공사법안, 의사일정 제108항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
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송영길 재정경제위원회 인
천 계양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한국투자공사법안, 이
상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관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공사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

썸드리면, 2004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법안이 제출된 이후 공청회, 소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및 KIC(Korea Investment Corporation)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KIC 설립이 한국 경제와 금융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과 전망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와 조문별 축조심사를 통하여 KIC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 자산 운용 성과의 공개 문제, 연기금 위탁 문제 등 당초 정부 원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폭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KIC 도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폭 수용해서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처리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자체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둘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측 인사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KIC를 만들어서 재경부 자리를 하나 더 늘리려는 게 아니냐, 굳이 이것을 정부에서 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효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경부 차원에서 자리를 늘리기 위한 KIC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 측 인사를 모두 배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내부 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등 공사의 자의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여 공사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외화 표시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원화표시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라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무제표, 자산 운용 수익률, 운용 전문인력의 변경 등 공사 경영 및 자산 운용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자산위탁기관 중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연기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에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KIC 법안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 모든 염려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KIC 법안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지고 재경위에서 표결 처리 돼서 올라왔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찬성 토론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환율이 1204원입니다. 환율에 대한 방어정책을 정부가 왜 개입했느냐? 작년 국정감사 때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개입해서 1조 8000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줄곧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같이 완전 변동환율 국가에서, 이 조그마한 오픈 스몰 국가에서 환율에 대해 완전히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환율이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약 2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적정 보유액이 얼마쯤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2000억이나 되는 달러, 이 외환자산을 어떻게 운용시킬 것인가, 과연 외화 조달 비용과 수익성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고민하기는 정부와 여당은 이 2000억 달러 중에 200억 달러를 떼어 내서 별도의 KIC라는 투자공사법을 만들어서 이 공사로 하여금 국제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뭔가 큰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동적으로 외국 금융사 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한국시장이 아니라 우리도 주도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개입해서 고급 정보를 흡수해 내고, 싱가포르 GIC처럼 적극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 허브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로 KIC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잘해 왔는데 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한국은행이 맡는 외화 운용 자산의 2000억 중 1800억은 그대로 한국은행이 운용합니다. 그중 200억 정도를 떼어 내어서 운용한다는 것은 은행과 간접 자산운용사는 근본적으로 철학적 토대가 다르고 운용의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KIC를 만들어서 상호 경쟁하게 함으로써 한국은행도 독점적으로 외화 자산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미진한 점들이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해서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00억의 자산 운용을 통해서.

싱가포르가 조그마한 GIC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파이낸스 빌딩도 인수하고 있고, 테마섹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그러한 국제 금융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 KIC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의 그러한 동일성의 문제나 공정성의 문제를 다 보완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수용기준을 다 수용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자조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조달 방식의 용어를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식 명칭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였고, 둘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각 기관에 전파 확산하기 위해서는 조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달 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

대하고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KIC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다 공표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우리 국정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도 꼭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투자공사법안 심사보고서

調達事業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107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惠薰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의 이혜훈입니다.

방금 송영길 의원님께서 우리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시면서 두 가지로 KIC가 꼭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수익률을 제고해야 된다, 외환시장에서 개입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최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것의 디딤돌을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온 국민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반대 요지의 논점은 그것을 반드시 공사라는 이름으로, 정부 조직으로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KIC가 동북아 금융 허브로 나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제고와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이 두 가

지 모두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에 비해서 결코 경쟁력이 없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동맥인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금융 부문이 취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된 관치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의 주범이 관치경제였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들까지도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관치 때문에 금융 선진화가 안 되고 있는데 금융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관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그동안 많이 받아들여서 6개 항목을 고쳤다고 송영길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KIC의 문제는 이렇게 지배구조를 조금 손보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부문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있는 한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설립한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투, 대투, 모두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투, 대투, 모두 다 지금 설립하려는 한국투자공사와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을 부어서 만든 기관들입니다. 한때는 이 기관의 이름이 한국투자공사, 이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혈세인 공적자금만 쏟아 붓고 혈값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한투는 공적자금이 6조 5000억 원 들어갔는데 지난 주에 팔렸습니다, 5500억 원도 못 받고. 6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 버린 일입니다. 대투는 어떻습니까? 4조 5000억 정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4500억에 지금 매각 협상이 진

행 중입니다. 한꺼번에 또 4조 원이 날아갈 판국에 있습니다.

대투와 한투, 두 기관 모두 다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한국투자공사보다는 훨씬 엄격한 지배구조와 견제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효율이 불가피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정부 실패사례가 그뿐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외 선물환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1조 8000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 버린 일이 생긴 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기억이 생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정부와, 이런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자금을 고위험 상품에다 투자하는 그런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는데 어느 국민이 이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시작도 되기 전부터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사의 초기 자본금 중에 1700억 원을 외평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평기금을 어떤 때 써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의하면 공사의 출자금으로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러한 불법의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정당한 제지를 표결로 밀어붙여서 무산시켰습니다.

자본금의 출처도 문제지만 2000억 원이나 되는 자본금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0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1조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본운용사인 스위스 RMF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과 80명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연간 20조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연평균 8%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멀리 세계적인 사례까지 찾을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투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조 원의 총자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159명이고 자본금은 930억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20조 원을 굴리겠다고 하

면서 20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1조까지 올린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자본금이 무엇입니까? 건물 사고, 집기 사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는 돈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덩치를 불릴 생각부터 먼저 하고 민간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몇 곱절 7배 이상 많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선진화,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고 민간에 온전히 맡길 때 금융 선진화는 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국회에서 우리 손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우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투자공사법안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제출한 주요 법안들에 비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는 등 법안 심의가 비교적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하게 내용을 개선한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투자공사법의 일부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은 애당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서 외환보유고 여유금과 이후 연기금으로 공격적 경영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또 외국 자산운용사를 끌어 들여서 금융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지금 외환보유고 여유 자금을 굴려서 때돈 벌 궁리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분께서도 얼마 전 환율 쇼크를 목도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투기 세력이 노다지를 캐는 앞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태를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외환정책의 총체적 오류에 대해서 정부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점을 진심으로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한국투자공사 설립목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환보유고 여유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외환보유고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 세계 4위를 자랑하듯 말합니다마는 저는 결코 자랑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보유고 과다 보유가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벌어들인 돈이 대부분이라면 자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과도한 환율방어를 위한 달러 매입과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외환정책 실패의 결과로 외환보유고 과다 보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달러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외환보유고에 따른 관리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릅니다. 즉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라고 하는 것은 달러 하락세로 인한 손실 규모가 세계 4위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보유고 여유분 운용방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적정보유고 수준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험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두 번째, 수익률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금융 교과서의 기본입니다. 외국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다가 장기로 투자하는 바람에 국가적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지난 외환위기 시절의 아픈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범위라고 주장하지만 한국투자공사를 통해서 외화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면 우리 경

제를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 다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 자산운용사를 끌어들여서 금융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재주로 국제 금융투기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정부는 답하기를 “우리 능력이 안 되니 유력한 외국 자산운용사를 끌어들여서 운용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입니다.

저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외국 투기기관에 외화보유자산의 운용을 맡긴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투자공사의 성패를 떠나서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투자공사를 통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고급 정보를 얻겠다는 발상도 대단히 일면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고급 정보를 외국자본에 노출시켜서 경영권 위협 등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훨씬 큼니다. 기업 내부정보가 외국자본에 유출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진로 사태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투자공사는 정부가 선한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고, 국부 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공사 설립배경이 되는 정부의 경제철학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설립은 제조업, 수출산업의 한계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 수출산업 구조로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그 가운데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업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생각은 한국 경제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부즈앨런&해밀턴 한국 보고서의 이른바 넷 크래커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국가 한들을 제외하고 제조업을 소홀히 하면서 금융만을 앞세운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충분한 경험적 증거도 없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은 실물성장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정부는 물론 제조업과 병행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이런 인식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소홀히 하게 되었던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국투자공사가 가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이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지역구인 재정경제위원회 김종률 의원입니다.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바로 걱정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늘의 우리 금융산업,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한국투자공사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 공공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전문투자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업을 금융부문의 핵심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 자산이 상당 수준에 이릅니다. 민간부문의 유동자금도 시중에 약 300조에서 400조 규모가 축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저금리 기조 정착, 고령화 추세 진전으로 전문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투, 한투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민간 부문에서 시장발전을 주도할 대형 선도 자산운용사나 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국형 투자은행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저는 바로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정부가 축적된 공공 부문의 자산을 활용해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대형 우수 자산운용사로 키워 나간다면 단기간 내에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자산운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민간부문의 자산운용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투자공사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방금 전 반대토론을 하셨던 이해훈 의원님을 비롯한, 또 반대토론하실 이종구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같이 참여해서 당초의 정부원안을 전면적으로 대폭 수정해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 그리고 일상적 기관운영에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한 예로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결집된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금융 부문의 선진화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실물 부문과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산업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한국투자공사가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서 홍콩 싱가포르 상해 동경, 각국이 아시아 금융허브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미 성공무대로 평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투자청은 충분한 실물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우리 투자공사의 설립을 긴장과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생각해 봅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하루아침에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같이 공공부문의 빅 푸쉬를 통해서 그 토대를 단단히 다져 나간다면 금융허브는 반드시 실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함께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향한 힘찬 여정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시간을 아주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九 議員 한나라당 강남갑 출신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달러당 환율을 115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외평기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약 400억 달러의 외환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50원이라는 환율이 유지가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은 천이삼십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100원 이상의 이러한 환율을 보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100원 이상의 보전의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5대 재벌 수출대기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외평기금의 손실은 1조 8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민,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벌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서브시디를 준 것입니다. 보조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늘어난 달러…… 지금 적정 외환보유고가 1500억 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유고는 2000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적정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 보유고를 털어서 KIC를 설립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저는 200억 불이 더 되는 이러한 외환보유고를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대기업에 대해서 서브시디를 준 이러한 부분을 다시 서민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늘어난 200억 불을 KIC를 설립해서 소위 인베스트먼트 बैं크들을 배분될 게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 그리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고용 인프라 네트워크의 건설 그리고 청년실업교육의 강화, 이러한 것에 200억 불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KIC를 만들어 가지고 자산운용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관치의 새로운 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증권이 해외 지점들이 다 폐쇄가 되고, 지금 민간 해외금융 네트워크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에 있는 민간 금융네트워크를 빨리, 시급히 건설하는 것이 KIC보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계 은행들이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돈을 쓴다면 저희 한나라당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KIC와 같이 관치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해서는 KIC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금융허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KIC 등을 관장하는 경제부처는 왜 공주·연기로 옮기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서로 간에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경제를 살펴봅시다. 지금 선진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가 아니라 빚진 경제입니다.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 가구당 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자만하시는 모양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만약에 외환보유고가 넘쳐난다고 그러면 200억 불을 쓰

는 것이 순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투자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6인 중 찬성 147인, 반대 109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석 252인 중 찬성 242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선출안(의장 제의)

(22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한 4인 가운데 작년 11월 24일 김덕현 위원의 임기 만료로 꺾어진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신혜수의 재산 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오늘 의원 여러분들

에게 배부해 드린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김재홍 의원, 오제세 의원, 최철국 의원, 박순자 의원, 박재완 의원, 최구식 의원, 조승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안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선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명패와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2시09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2시2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53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53매로서 명패수와 꼭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53표 중 가 212표, 부 37표, 무효 4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나라당 의석이 지금 현재 이 시간 비어 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고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조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의원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의장로서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민련 의원님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실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9시 30분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며,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대안)은 금일 오후 10시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바 오늘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12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0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정세균의원 대표발의)(정세균·원혜영 의원 외 149인 발의)

(22시47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109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심사보고 하세요.

○**건설교통위원장 김한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길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하에 신행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째 연기·공주지역을 활용하고, 둘째 금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며, 셋째 2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끝으로……

(장내 소란)

(「그만두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계속해요.

○**건설교통위원장 김한길** 이 심사보고서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하는 의원 있음)

안상수 의원, 5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안 하신다고 하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安商守 議員** 이렇게 그냥 직권으로 상정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직권이 아니라 협의를 했고 법사위원회에서의 회의 진행이 방해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기일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安商守 議員** 마음대로 직권상정해도 됩니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토론해 주세요.

○**安商守 議員** 이렇게 직권상정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독재국가입니까, 이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법사위 문 걸어 잠근 게 누굽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민투표를 실시해라」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여러분 이게 행정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수도를! 수도를 옮기는 것을 이렇게 어거지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누가 반대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러면 의장으로서 토론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安商守 議員** 그래도 의장도 인격이 있는 분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래서 내가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商守 議員**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의총을 소집하고 있고 의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해도 됩니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심사기간을 정해서 9시 30분까지 법사위원회가 심사해서 부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安商守 議員**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의원총회 하는 도중에……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그래서 제안설명을 했고 반대토론까지 기회를 드렸는데, 안상수 의원,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시면 의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安商守 議員** 반대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요.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회의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議員** 반대토론 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반대토론을 하시려면 조용히 해 주세요.

○**安商守 議員** 한나라당 의원총회 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나라당이 지금 의원총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장께서 한나라당 의원총회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날치기하는 거요,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안 그래요?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뭐니까?

(「법사위 문 잠그고 누가 있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날치기 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안 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의원 들어온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야!」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의총에 가서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안 들려요.

(「한나라당 의원이 들어온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투표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날치기 막아요,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고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수도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쇼 그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반대토론을 왜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안 했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뭘가 민주적 절차야, 뭘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안 하겠다고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으로서는 안상수 의원에게 반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시다마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장내가 소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토론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겠다니까 그러네」 하는 의원 있음)

(「김덕규 날치기 막아」 하는 의원 있음)

(「뭘가 날치기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더 이상 투표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게 그리 급하냐」 하는 의원 있음)

(「김덕규, 날치기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반대토론 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재석 17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덕규 부의장! 그럴 줄 몰랐어」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김덕규 부의장, 심판받을 거야.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으로서는 제지할 권한도 있고 그리고 퇴장을 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정을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요청을 합니다.

(「권한대로 제지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당신들이 옛날에 날치기 비난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왜 법사위 가로막아」 하는 의원 있음)

(「이 투표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투표를 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르지 말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데까지 밟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의총 하는데 왜 진행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심 의원, 내려가세요.

(「한나라당이 의총 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진행해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하다 왜 의총을 해」 하는 의원 있음)

(「불법 야합도 합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내려가세요.

110.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3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의사일정 제110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왜 일방적으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의장석 옆에서 - 이런 날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날치기 합니까? 왜 직권 상정이요. 무슨 직권이 있어요.)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니깐 그러지」 하는 의원 있음)

(○김문수 의원 의장석 옆에서 - 무슨 폭력을 행사했어, 무슨 폭력을? 날치기하면 안 돼요. 왜 날치기해.)

(「강패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한나라당이 한창 의총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하다가 의총하는 게 어딴어」 하는 의원 있음)

(○배일도 의원 단하에서 - 민주주의는 인내입니다. 참아 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직권 상정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서 역사적 굴레를 어떻게 풀어지고 갈 겁니까?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내 아닙니까? 참아 줘야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낫다는 판단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평생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 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날치기할 줄 정말 몰랐다, 한 달 연기해 주면 되잖아, 한 달을 왜 못 기다려 주나」 하는 의원 있음)

(「천추의 한이 될 거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앉아 계시지요.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한 달을 뭐 하러 기다려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바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현재 의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가 방해받거나 훼손이 되면 결코 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박계동 의원 단하에서 - 현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이런 국회는 반민족적이며 반헌법적인 처사다! 김덕규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회의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날치기 김덕규 내려와, 빨리!」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바뀌서 의사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사회 자격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김명자 의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김명자 의원님, 내려와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날치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한 달 기다려서 국민토론회도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서둘러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그냥 들고 하세요.

(장내 소란)

(「군사작전하듯이 날치기 통과야」 하는 의원 있음)

(「4월 국회에서 하면 얼마든지 될 일을 왜 그래요, 도대체? 국민여론도 수렴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단하에서 애국가 제창)

(「제안설명 좀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방위원장대리 김명자 ……

(장내 소란)

(「날치기 김덕규는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덕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김덕규는 물러나라!」 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는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토론, 황진하 의원께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심사보고서도 청취할 수가 없고 반대토론도 또한 청취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물러가라, 김덕규」 하는 의원 있음)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우리 국가경제를 요절낸 수도 이전 반대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심사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리고 반대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방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장내 소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 도중에 회의를 진행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이 의총을 한다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시간을 드렸고 기다리던 중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오늘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계세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는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국회가 통법부가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날치기 김덕규는 물러가라. 김덕규는 믿을 수 없다. 물러가라. 날치기 김덕규는 의사 진행할 자격이 없다」 하는 의원 있음)

결코 날치기가 아닙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49인, 반대 22인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못 믿겠다 김덕규, 물러나라. 날치기 김덕규 못 믿겠다.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김문수를 못 믿겠다. 김문수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금일 김원웅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오늘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이런 초헌법적인 통과를……」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임시국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설 연휴기간이 포함되어서 짧은 회기였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국회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하는 의원 있음)

「통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합의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통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의정사상 가장 많은 법률안을 포함한 110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시설의 의무화 등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는 데는 많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따라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

1.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온실가스의 급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각국은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 지구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음. 기후변화협약은 기본적으로 세계기후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자연생태계의 비가역적(非可逆的) 변화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환경관련

국제협약과는 달리 그 논의의 대상이 단순히 지구보전을 위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직접 규제하는 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성장구도나 산업구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연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지 다소비형(多消費型)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에너지원마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여서 기후변화협약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임. 또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1997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여타 개발도상국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기여도에 따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각국에 지우고 있다.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여야 하느냐에 대한 각국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협약이 체결된 지 12년이 흐르는 동안 이행방법 등 아직까지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된 적은 없음.

따라서 국회는 기후변화협약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경제적 위기와 환경적 위기를 최소화하고자, 국가 제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42인)

찬성의원(239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조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3인)
 김정부 안상수 이규택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50인)

찬성의원(24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조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문병호	문학진	민병두	박근혜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안영근	안택수	양형일	엄호성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제종길	조정태	조성래	조성태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주승용	진수희	진영	천영세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황우여	황진하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반대의원(7인)

김광원	김정부	안상수	엄호성
이규택	주호영	최경환	

기권의원(1인)

이한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54인)

찬성의원(20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경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김희송	류근찬	맹형규
김희진	민병두	박근혜
김희광	박병석	박상돈
김희일	박순자	박승환
김희근	박진	박찬숙
김희준	박희태	배기선
김희륜	서재관	서혜석
김희용	신국환	신기남
김희용	심재엽	심재철
김희옥	안병엽	안상수
김희수	양형일	엄호성
김희식	우상호	우윤근
김희항	원혜영	원희룡
김희홍	유선호	유승민
김희태	유재건	유정복
김희영	윤원호	윤호중
김희재	이계경	이계안
김희재	이균현	이근식
김희회	이방호	이병석
김희배	이상열	이석현
김희영	이시종	이영호
김희성	이윤성	이인기
김희창	이종구	이주호
김희구	이해봉	이혜훈
김희영	임채정	장경수
김희석	장향숙	전병현
김희윤	정두언	정문헌
김희주	정세균	정의용
김희선	정종복	정화원
김희숙	조배숙	조성래
김희식	조정식	주성영
김희규	천정배	최경환
김희규	최병국	최성
김희용	최인기	최재성
김희철	한명숙	한병도
김희천	한태열	홍문표
김희형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42인)

강기갑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권영길	김낙순	김재윤	김종인
김현미	노희찬	단병호	문석호
박세환	박찬석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안민석

안 홍 준 양 승 조 우 원 식 유 승 회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기 우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인 제 임 종 인 장 영 달
 정 성 호 정 청 래 조 승 수 주 호 영
 진 영 천 영 세 최 순 영 한 광 원
 현 애 자 홍 준 표

기권의원(11인)
 강 성 종 김 영 춘 노 응 래 오 제 세
 이 규 택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종 결 전 재 희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성 래 조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회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기권의원(3인)
 김 정부 엄 호 성 정 화 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의원(254인)

찬성의원(25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채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엽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法院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55인)

찬성의원(24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채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석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단병호 황진하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병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김기현 김애실 김정부 김정훈
 문석호 박병석 안상수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이상민

반대의원(11인)

김기현 김애실 김정부 김정훈
 문석호 박병석 안상수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이상민

기권의원(3인)

나경원 박근혜 이규택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56인)

찬성의원(255인)

장기갑 장기정 장길부 장봉균
 장성종 장재섭 장창일 장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루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증 식	신 학 용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해 숙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형 일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김 기 석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우 제 항	우 원 혜	우 원 희	유 기 준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결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속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권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종 인	임 채 정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신 계 루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증 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진 수 회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우 원 혜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유 재 건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기권의원(1인)

양 승 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55인)

찬성의원(255인)

이재우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박백원	박복기	서병수	서상기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장향숙	장병헌	전여옥	전재희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장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家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53인)

찬성의원(251인)

장기갑	장기정	장봉균	장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기권의원(2인)

김재원 정화원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55인)

찬성의원(24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노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중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2인)

강기갑	권영길	김정부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안상수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35인)

찬성의원(16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운	김정훈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청래 세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58인)

권경석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명주 김성조 김영덕 김용갑
 김재원 김정부 김종인 김학송
 김학원 김효석 류근찬 맹형규
 박성범 박재완 박종근 박창달
 박희태 신국환 심재엽 안경률
 안상수 안택수 엄호성 유승민
 윤건영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규택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해봉 임인배 장윤석 정갑윤
 정장선 정종복 주호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인기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6인)

박진 서상기 송영선 신중식
 심재철 안홍준 우재창 유정복
 유필우 이병석 이영호 이종구
 이해훈 정두언 주승용 최연희

투표의원(221인)

찬성의원(21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5인)
 김정훈 송영선 유승민 주호영
 최구식

기권의원(1인)
 권영세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 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代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22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22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재원 김종인 김학송 김현미 김희정 노희찬 문석호 박근혜 박상돈 박순자 박창달 백원우 서재관 송영선 신학용 안명옥 안영근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승희 윤건영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상민 이승희 이원영 이인영 이종구 이호웅 임종인 장영달 전여옥 정봉주 정의화 제종길 조진 최규순

김양수 김영춘 김재윤 김춘진 김학원 김형오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기춘 박성범 박승환 박형준 박기왕 서혜석 신국환 심재엽 안민석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인태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기우 이병석 이상배 이시종 이윤성 이인제 이주호 이화영 임채정 장윤석 장재희 정성호 조경태 주성영 천정배 최규연

김영덕 김용갑 김정부 김태년 김한길 김형주 노웅래 맹형규 문희상 박명광 박세일 박재완 박희태 서갑원 신기남 심재철 안병엽 안홍준 엄동연 우원식 유선호 유정복 윤호중 이경재 이광재 이명규 이상경 이석현 이용희 이인기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병헌 정문헌 정의용 정청래 조성래 주호영 최구식 최병국 최용규

김영숙 김원웅 김정훈 김태홍 김혁규 김효석 노현송 문병호 민병두 박병석 박세환 박찬숙 배기선 서상기 손봉숙 신중식 안경률 안상수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승민 유필우 이강두 이군현 이미경 이상득 이석현 이인기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병헌 정문헌 정의용 정청래 조성래 주호영 최구식 최병국 최인기

최재천 한병도 허태열 홍준표
 최철국 한선교 홍문표 홍창선
 한광원 한화갑 홍미영 황우여
 한명숙 허채형 황진하

기권의원(4인)
 단병호 조승수 천영세 현애자

○韓國報勤福祉醫療公團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230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권경석 김광원 김낙순 김명주 김석준 김양수 김영춘 김재윤 김춘진 김학원 김형오 노영민 단병호 문석호 박근혜 박상돈 박순자 박찬숙 배기선 서상기 손봉숙 신중식 안경률 안상수 양승조 오영식 김우윤 김희룡 김승민 이강두 이군현 이미경 이상득 이석현 이인기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병헌 정문헌 정의용 정청래 조성래 주호영 최구식 최병국 최인기

강기정 강재섭 고진화 권선택 김교홍 김덕규 김무성 김선미 김영덕 김용갑 김정부 김태년 김한길 김형주 김형오 노웅래 류근찬 문학진 박기춘 박성범 박승환 박창달 백원우 서재관 송영선 신학용 안명옥 안영근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승희 윤건영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상민 이승희 이원영 이인영 이종구 이호웅 임종인 장영달 전여옥 정봉주 정의화 제종길 조진 최규순

강길부 강창일 고홍길 권영세 김기현 김덕룡 김병호 김성곤 김영숙 김원웅 김정훈 김태홍 김혁규 김효석 노현송 맹형규 문희상 박명광 박세일 박재완 박형준 박기왕 서갑원 서혜석 신국환 심재엽 안민석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인태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기우 이병석 이상배 이시종 이윤성 이인제 이주호 이화영 임채정 장윤석 장재희 정성호 조경태 주성영 천정배 최규연

강봉균 강혜숙 구논희 권오을 김낙성 김명자 김부겸 김성조 김영주 김재원 김종인 김학송 김현미 김희정 노희찬 문병호 민병두 박병석 박세환 박진태 서갑원 신기남 심재철 안병엽 안홍준 엄동연 우원식 유선호 유재건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이 호 용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2인)

이 상 배 천 영 세

○青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6인)

찬성의원(23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부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회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복 기 왕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이 호 용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박 형 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투표의원(213인)

찬성의원(21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윤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춘 길	김 태 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김 태 홍	김 학 원	김 한 주	김 혁 규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이 석 현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이 철 우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복 기 왕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병 엽	안 상 수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근 식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홍 창 선	황 우 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반대의원(5인)

김 정 훈	나 경 원	박 세 환	유 승 민
최 구 식			

기권의원(2인)

김 형 오	송 영 선
-------	-------

○割賦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2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춘 길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원	김 한 주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김재원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체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2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현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미경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상득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석현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기권의원(1인)

이윤성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2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복기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고진화	고홍길	구논오	고권경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학용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명주	김병호	김부결	김석준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신국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두언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승희
홍창선	황우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반대의원(1인)

이승희

기권의원(2인)

박승환 송영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22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중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오	고권경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결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주승용	주호영	진영	천영세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이승희	이시중	이영순	이영호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반대의원(3인)				이종걸	이종구	이혜훈	이호웅
박세환	유승민	최구식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기권의원(3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김형오	송영선	유기준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韓國國際交流財團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1인)

찬성의원(208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선택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이승희	이시중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2인)

김명주	김석준	김재원	김정부
박성범	박세환	박형준	유승민
이상배	정문헌	정병국	최병국

기권의원(1인)

송영선

○在外同胞財團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0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선택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창달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8인)

김명주 김석준 김재원 김정부
 나경원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찬숙 박형준 유승민 이계경

이계진 이방호 이상배 정문헌
 정병국 최병국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227인)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기우 이명규
 이계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해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이 임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황 진 하

반대의원(1인)
 이 상 배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감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업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해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황 진 하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5인)

찬성의원(23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

금지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0인)

찬성의원(22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진화, 고권선, 고권철, 김낙성, 김동철, 김병호, 김성곤, 김영주, 김재원, 김종률, 김태년, 김혁규, 김효석, 노웅래, 류근찬, 문학진, 박명광, 박순자, 박찬숙, 백원우, 서병수, 선병렬, 신기남, 안경률, 안택수, 엄호성, 우원식, 원혜영, 유선호, 유재건, 윤호중, 이경재, 이광재, 이기우, 이상득, 이성권, 이영호, 이인기,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여옥, 정몽준, 정세균

고홍길, 고영길, 김광원,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성조, 김영춘,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맹형규, 문희상, 박상돈, 박승환, 박창달, 변재일, 서상기, 손봉숙, 신학용, 안명옥, 안홍준,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승희, 이정복, 이강두, 이계경, 이광철, 이명규, 이상민, 이승희, 이원영, 이인영, 이종구, 이호웅, 임종인, 장영달, 전재희, 정문의

구노회, 권영세, 김교홍, 김덕규, 김명주, 김석준, 김양수, 김용갑, 김정부, 김춘진, 김학송, 김형오, 나경원, 노회찬, 문병호, 민병두, 박성범, 박재완, 박형준, 복기왕, 서재관, 신계륜, 심상정,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시민, 유필우, 이강래, 이계안, 이근현, 이방호, 이상배, 이시종, 이윤성, 이재웅, 이철우, 이화영, 임채정, 장항숙,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권경석, 권오현, 김기룡, 김무성, 김선미, 김영덕, 김원웅, 김정훈, 김충환, 김학원, 김형주, 노영민, 단병호, 문석호, 박기춘, 박세일, 박진태, 박희원, 서갑석, 신국환, 심재철, 안상수, 양형일,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인태,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근식, 이병석, 이상열, 이영순, 이은영, 이재창, 이해봉, 임인배, 장경수, 전병헌, 정두언, 정성호, 정장선

정중복, 정조배, 조정식, 천정배, 최규식, 최연희, 최재천, 한선교, 현애자, 홍준표

정청래, 조성래, 주승용, 최경환, 최병국, 최용규, 최철국, 한화갑, 홍문표, 홍창선

제종길, 조승영, 조구식, 최성기, 최인기, 한광원, 허천영, 홍미영, 황우여

조경태, 조일현,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재성, 한병도, 허태열, 홍재형, 황진하

기권의원(2인)

박세환, 송영선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4인)

찬성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노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심상정, 심재덕,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선호, 유재건, 윤호중, 이경재, 이광재, 이기우, 이상득, 이성권, 이영호, 이인기,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여옥, 정몽준, 정세균

강기정,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고진화, 고홍길, 권영길, 권영세, 김교홍, 김기현, 김덕룡, 김동철, 김부겸, 김석준, 김양수, 김용갑, 김정훈, 김태년, 김혁규,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맹형규,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찬숙, 박창달, 변재일,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심상정, 심재덕, 안경률,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선호, 유재건, 유인태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노근찬	노형규	문석호	문학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경률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인)

김재원

기권의원(1인)

심재철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1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반대의원(9인)

박찬숙	송영선	심재철	유승민
이상민	이혜훈	전여옥	정병국

기권의원(1인)

박 근 혜
 (김영덕·김충환·박상돈·서갑원·서병수·
 안경률·이계안·이병석·이윤성·이혜훈·
 정의화 의원 버튼 미조작, 강혜숙·안홍준 의
 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20인, 찬
 성의원 210인, 반대의원 9인, 기권의원 1인임)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22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룡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권오을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26인, 찬성의원 226인임)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22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룬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이인기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28인, 찬성의원 228인임)

찬성의원(206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룬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룬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형 준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병 엽
 안 명 옥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룬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4인)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의원(15인)

강 기 갑 김 광 원 김 양 수 김 재 원
 김 정 부 노 회 찬 단 병 호 이 방 호
 이 상 배 이 계 진 이 영 순 조 승 수
 최 경 환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의원(3인)

심 상 정 천 영 세 허 태 열
 (고홍길·박찬숙·서병수 의원 버튼 미조작,
 김충환·이계진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24인, 찬성의원 206인, 반대의원
 15인, 기권의원 3인임)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1인)

찬성의원(22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홍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룡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업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의원(2인)

김 기 현 안 상 수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7인)

찬성의원(170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동철 김부겸 김양수 김원웅 김종률 김태년 김혁규 김희정 단병호 문학진 박명광 박종근 변재일 서재관 신계륜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재건 이강래 이광재 이명규 이상열 이영호 이은영 이해봉 임채정 장윤석 정세균 정종복 조성래 천영성 최인기 한광원 홍문표 홍창선

김명자 김선미 김영덕 김재경 김종인 김태홍 김현미 노웅래 류근찬 문희상 박병석 박진 서갑원 서혜석 신국환 심상정 안병엽 양형일 우원식 유선호 유정복 이경숙 이광철 이미경 이승희 이용희 이인영 이호웅 장경수 장향숙 정의용 정청래 조승수 천정배 최순영 최재성 황우여

김명주 김성곤 김영주 김재윤 김춘진 김학송 김형주 김현송 노문병호 민병두 박세일 박희태 서병수 신기남 심재덕 안영근 오영식 우윤근 유승희 윤원호 이경재 이근식 이병석 이시중 이원영 이종걸 임인배 장복심 전병헌 정의화 제종길 조일현 최구식 최연희 허태열 홍재형

김병호 김성조 김영춘 김정훈 김충환 김학원 김효석 노회찬 문석호 박기춘 박승환 백원우 서상기 손봉숙 신중식 심재철 안택수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인태 이강두 이기우 이상득 이영순 이윤성 이철우 임종인 장영달 정성호 정장선 조배숙 조정식 최규식 최용규 최철국 현애자 홍준표

반대의원(52인)

강기정 권오을 김영숙 나경원 고홍길 권철현 김용갑 노영민 권경석 김광원 김재원 맹형규 권영세 김석준 김정부 박상돈

박성범 박형준 안명옥 윤호중 이상배 이종구 전재희 조경태 최병국 박순자 송영선 안상수 이계진 이성권 이주호 정두언 주승용 한선교 고진화 박근혜 유필우

기권의원(5인)
강성중 이재창

○基礎科學研究振興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11인)

강봉균 강혜숙 권선택 김광원 김낙순 김병호 김성곤 김영숙 김재경 김정훈 김태년 김형주 노영민 맹형규 문희상 박병석 박순자 박진 백원우 서재관 송영선 신중식 심재철 안병엽 안홍준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인태 강성종 고진화 권영세 김교홍 김동철 김부겸 김성조 김영춘 김재원 김종률 김태홍 김효석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박상돈 박승환 박찬숙 변재일 서혜석 신계륜 신학용 안경률 안상수 양승조 우원식 원혜영 유선호 유재건 강재섭 고흥길 권오을 김기현 김명자 김석준 김양수 김용갑 김재윤 김춘진 김학원 김희정 나경원 류근찬 문희상 박명광 박세환 박종근 박희태 서상기 손봉숙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오영식 우제창 유기준 유시민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김희정	김경원	김영민	김노래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정배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반대의원(9인)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2인)

양형일 이영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21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김경원	김영민	김노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인)

이영순
(박희태 의원 버튼 미조작, 한선교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22인, 찬성의원 221인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20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7인)

찬성의원(215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혜영	김태홍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기권의원(2인)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김재원	윤원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郵便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4인)

찬성의원(221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황진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반대의원(1인)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한광원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호웅
기권의원(2인)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송영선	이영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3인)

찬성의원(212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반대의원(8인)

김재원	박승환	심재엽	이시종
이영호	이혜훈	조일현	한광원

기권의원(3인)

김영덕	박형준	조승수
-----	-----	-----

○大韓民國藝術院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6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창 달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박 형 준	박 회 태	백 원 우	변 재 일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윤 건 영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명 광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박 순 자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박 찬 숙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백 원 우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서 재 관	변 재 일	서 병 렬	서 상 기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회	신 국 환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화 영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전 병 헌	전 재 회	정 두 언	정 문 헌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중 길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황 우 여	황 진 하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반대의원(5인)

김 석 준	박 찬 숙	이 혜 훈	전 여 옥
정 갑 윤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207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명 광
박 순 자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찬 숙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백 원 우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서 재 관	변 재 일	서 병 렬	서 상 기
신 국 환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중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의원(2인)

고 홍 길 전 여 옥

기권의원(1인)

송 영 선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의원(4인)

박 승 환 송 영 선 안 상 수 이 혜 훈

기권의원(2인)

김 재 원 윤 건 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3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208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박 근 혜 박 성 범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김영숙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문학진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박상돈	박순자	박재완	박형준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이상열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두언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반대의원(2인)

김성조 안상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182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반대의원(22인)

권철현	김용갑	김재원	김정부
김정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서병수	송영선	안상수	엄호성

윤건영 이방호 이종구 이혜훈
 전여옥 정갑윤 정의화 최병국
 홍준표 황진하
기권의원(6인)
 박근혜 박세환 박찬숙 박창달
 심재철 조배숙

이영호 이유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210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기권의원(2인)

김정훈 이해봉
 (전재희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12인, 찬성의원 210인임)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2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황우여	황진하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반대의원(6인)

김광원	박세환	박찬숙	이방호
이상배	최경환		

기권의원(1인)

송영선

(이윤성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09인, 찬성의원 202인임)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207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4인)

김광원 이방호 이상배 전여옥

기권의원(1인)

김성곤

(박희태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12인, 찬성의원 207인임)

이상배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0인)

찬성의원(190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內水面漁業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90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유 원 호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권 철 현

○水上레저安全法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점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효 석 김 회 정 남 경 필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변 재 일 박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서 선 병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륜 안 명 옥
 안 병 엽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인 기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1인)

정 의 용

○船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9인)

찬성의원(17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점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고홍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김기현	김낙성	김명자	김명주
박근혜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회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박찬숙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승민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이철우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이강두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정장선	정종복	제종길	조배숙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주호영	진영	천영세	천정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임인배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정의화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황우여				조배숙	조정식	조승수	제종길
반대의원(1인)				조정식	주호영	진영	조일현
이원영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천영세
기권의원(1인)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병국
이상배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용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최철국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허천형
				홍준표	황우여		홍재형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8인)

찬성의원(178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고진화

○公有水面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0인)

찬성의원(178인)

장기갑	장기정	강봉균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기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1인)

안상수

기권의원(1인)

제종길

○公有水面埋立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1인)

찬성의원(178인)

장기갑	장기정	강봉균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두언 정성호 정중복 조일현 천영세 최병국 최용규 최철국 허천 홍준표
 전여옥 정문헌 정의용 조배숙 조정식 천정배 최성 최인기 한광원 현애자 황우여
 전재희 정병국 정의화 조성래 주호영 최규성 최순영 최재성 한병도 홍문표
 정갑윤 정봉주 정장선 조승수 진영 최규식 최연희 최재천 한선교 홍재형

반대의원(1인)

안상수

기권의원(2인)

이상민 제종길

이목희 이상민 이원영 이재창 임종인 장영달 정갑윤 정성호 정중복 조정식 최규성 최연희 최재천 허태열 황우여
 이방호 이상배 이윤성 이주호 임채정 장향숙 정두언 정의용 체종길 진영 최규식 최용규 최철국 홍문표
 이병석 이성권 이은영 이해봉 장경수 전병헌 정문헌 정의화 조배숙 천정배 최병국 최인기 한병도 홍재형
 이상득 이용희 이인기 임인배 장복심 전여옥 정봉주 정장선 조성래 최구식 최성 최재성 허천 홍준표

반대의원(11인)

김양수 박형준 정병국 권영길 송영선 전재희
 김재원 심상정 조승수 노회찬 안상수 천영세
 단병호 이혜훈

기권의원(3인)

권영길 송영선 전재희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161인)

강기정 고흥길 권오을 김기현 김명주 김선미 김영숙 김재윤 김충환 김혁규 나경원 문병호 박근혜 박세환 박종근 변재일 서상기 손봉숙 심재철 안택수 엄호성 원혜영 유승희 유필우 이경재 이균현
 강봉균 구논회 권철현 김낙성 김병호 김성곤 김영주 김정부 김태년 김현미 남경필 문석호 박병석 박순자 박찬숙 복기왕 서재관 신국환 안경률 오영식 유기준 유시민 윤건영 이계안 이근식
 강재섭 권경석 김광원 김덕룡 김부겸 김성조 김용갑 김정훈 김학송 김효석 류근찬 문희상 박상돈 박승환 박창달 서갑원 서혜석 신기남 안명옥 양승조 오제세 유선호 유재건 윤원호 이계진 이기우
 고진화 권영세 김교홍 김명자 김석준 김영덕 김원웅 김춘진 김한길 김희정 맹형규 민병두 박성범 박재완 박희태 서병수 심재엽 안병엽 양형일 우윤근 유승민 이정복 이강두 이광재 이명규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72인)

강기정 고흥길 권영세 김교홍 김명주 김선미 김영덕 김원웅 김정훈 김학송 김효석 단병호 문석호 박병석 박순자 박창달 복기왕 서혜석 신국환 심재철
 강봉균 구논회 권오을 김기현 김병호 김성곤 김영숙 김재원 김춘진 김한길 김희정 류근찬 문희상 박상돈 박승환 박형준 서갑원 서상기 신기남 안경률
 강재섭 권경석 권철현 김낙성 김부겸 김성조 김영주 김재윤 김충환 김혁규 나경원 맹형규 문병두 민병두 박성범 박재완 박희태 서병수 심상정 안명옥
 고진화 권영길 김광원 김명자 김석준 김양수 김용갑 김정부 김태년 김현미 노회찬 문병호 박근혜 박세환 박찬숙 변재일 서재관 송영선 심재엽 안병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신국환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택수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인기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용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장선	정종복	제종길	조배숙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진영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정종복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조정식	주호영	진영	천정배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허태열	홍문표	홍재형	황우여	최재천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7인)

찬성의원(170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반대의원(1인)

권영길

기권의원(6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61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고진화
구논회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성권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호영 진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4인)

단병호 이영순 조승수 현애자

기권의원(7인)

권영길 노회찬 박세환 심상정
 이상배 천영세 최순영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장선 정종복 제종길 조정식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배
 주호영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인)

김양수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7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고진화 구논희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의원(170인)

찬성의원(140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고진화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동철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국환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민	유시민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종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진병헌	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조성래	주승용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형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반대의원(21인)

강기갑	강혜숙	권영길	김석준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순자
손봉숙	심상정	안상수	엄호성
이성권	이영순	이혜훈	조승수
주호영	진영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9인)

박근혜	박세환	박재완	박형준
-----	-----	-----	-----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전재희
제종길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49인)

찬성의원(149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헌	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성	허천형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2인)

찬성의원(151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송영선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성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1인)

이규택

투표의원(153인)

찬성의원(151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성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2인)

송영선 전재희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5인)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찬성의원(155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광 원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용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송 영 선 신 기 남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흥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재 성
 한 병 도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영 세 김 광 원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재 원
 김 용 갑 김 원 용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찬 숙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형 준
 박 회 태 백 원 우 박 성 범 박 찬 숙
 복 기 왕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송 영 선 신 기 남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흥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향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목 희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상 배
 이 미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원 영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재 창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해 봉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철 우 임 채 정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재 성
 한 병 도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의원(1인)
 권 오 을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6인)

찬성의원(155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醫療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7인)

찬성의원(154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두 박명광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찬석
 박병석 박성범 박재완 박찬석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승민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재건 유정복
 유시민 유인태 유호중 이강두
 유필우 윤원호 이규택 이근식
 이계진 이광철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중복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성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반대의원(1인)

박찬숙

기권의원(2인)

박승환 박형준

찬성의원(155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두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승민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정복 이강두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윤성 이종걸
 이화영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봉주 정성호
 정중복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의용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성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2인)

박재완 전여옥

찬성의원(155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성
 한병도 허천현 애자홍 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1인)

박형준

찬성의원(150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현 애자홍 문표 홍미영

기권의원(2인)

윤건영 전재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153인)

찬성의원(153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152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세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박세환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신기남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경제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병석	이상득	이석현	이성권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이해봉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제종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철국	한병도	허천	현애자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	기권의원(1인)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박세환			
홍창선							

○大氣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53인)
찬성의원(152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세

○水質環境保全法 全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55인)
찬성의원(154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영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1인)

박세환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9인)

찬성의원(158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우원식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기준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인태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윤건영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이경숙
 윤원호 윤호중 이광재 이광철
 이경재 이계안 이명규 이목희
 이근현 이근식 이명규 이석현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영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1인)

박세환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1인)

찬성의원(159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원웅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영주	김원웅	김재윤	김재윤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박성범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심상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심상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유제창	유제항	유기준	유선호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균현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석현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병석	이상득	이석현	이성권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기권의원(2인)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김재원	박세환			홍재형	홍창선		

○水道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2인)

찬성의원(16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3인)

찬성의원(16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기권의원(2인)

권오을 장윤석

찬성의원(16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심상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승희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병석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윤석 장항숙 전병헌 정성호
 정갑윤 정두언 정의화 정종복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조승수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영세
 최규성 최연희 최병국 최재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최재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열 홍재형 현애자 홍문표

기권의원(2인)

권오을 김병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65인)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174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해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1인)

정덕구

○貨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2인)

찬성의원(18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해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세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0인)

찬성의원(18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3인)

찬성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박찬숙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이근식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85인)

찬성의원(18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서갑원·전재희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85인, 찬성의원 185인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174인)

찬성의원(171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박형준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손봉숙 송영선 심상정 심재엽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은영 이종구 이종구 이계안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혜훈 이혜훈 임채정 이근식 이상득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임중인 임채정 이은영 이은영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이종구 이혜훈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조승수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용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성호 정세균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성태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조승수 조일현 조성래 조성태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조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한광원 한병도 허천형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재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형
 홍창선 홍창선 홍창선

기권의원(3인)

김정훈 안상수 홍창선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173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안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훈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형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홍창선

반대의원(1인)

유기준

기권의원(1인)

안상수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77인)

찬성의원(175인)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정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허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기권의원(2인)

복기왕 송영선

찬성의원(16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심재엽 심재철 안정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경재 이계진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화영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향숙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허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23인)

강기갑 권영길 김석준 김양수
 김재원 김정훈 나경원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83인)

송영선 심상정 유기준 이계진
이영순 이해봉 이해훈 정병국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5인)

찬성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기권의원(2인)

안상수 정화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투표의원(187인)

찬성의원(17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중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천 정 배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반대의원(8인)

강 기 갑 권 영 길 김 기 현 김 양 수
 심 상 정 이 해 봉 정 의 화 천 영 세

기권의원(5인)

박 승 환 이 영 순 정 화 원 조 승 수
 최 순 영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5인)

찬성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를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업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중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의원(3인)

권 영 세 김 재 원 정 화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87인)

찬성의원(15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재 송
 김 중 룰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세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백 원 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상기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결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양수 김영덕 김우남 김원웅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김중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이경제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형준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철우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장향숙 전병헌 정문헌 정봉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주승용 진영 천정배 최구식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석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홍창선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반대의원(28인)

강기갑 광성문 권영길 김석준
 김양수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나경원 박성범 박순자 송영선
 심상정 엄호성 윤건영 이계진
 이종구 이주호 이혜훈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화원
 조승수 천영세 최병국 허태열

기권의원(6인)

김기현 박승환 서병수 심재철
 이영순 최순영

(정종복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87인, 찬성의원 153인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투표의원(187인)

찬성의원(17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결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중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석현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영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인기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철우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임종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장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반대의원(13인)

김광원 김덕룡 김용갑 김재원
 박찬숙 안명옥 안상수 이종걸
 이혜훈 전재희 정문헌 정병국
 홍창선

기권의원(3인)

김형주 송영선 심재철

○特殊教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88인)

찬성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93인)

찬성의원(19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성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흥 미 영
 흥 재 형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속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흥 미 영 흥 재 형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5인)

찬성의원(19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름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반대의원(1인)

김 정부

기권의원(3인)

김 기 현 박 형 준 정 화 원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20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덕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재 완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학 용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재 완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학 용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목 회	이 미 경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열	이 성 권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이 인 영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목 회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열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종 걸	이 종 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중
강 재 섭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덕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복 기 왕	서 갑 원	서 해 석
서 재 관	서 해 석	신 학 용
송 영 길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병 엽	안 병 엽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양 형 일
오 영 식	오 제 세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창
유 기 준	유 기 홍	유 기 홍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재 건
윤 건 영	윤 호 중	윤 원 호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경 재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광 철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목 회
이 상 득	이 성 권	이 상 열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영 순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은 영
이 종 걸	이 주 호	이 종 구
이 해 봉	이 호 응	이 혜 훈
임 종 인	장 경 수	임 채 정
장 윤 석	전 병 현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문 현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성 호
정 청 래	정 화 원	정 청 래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조 정 식
천 정 배	최 경 환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순 영	최 병 국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재 성
한 병 도	허 천	한 병 도
홍 재 형	홍 창 선	홍 재 형

홍준표 홍창선
 기권의원(2인)
 김성조 박명광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1인)

찬성의원(12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홍길
구논회	권선택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명주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원웅	김재원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세일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창달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병엽	안영근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계안	이광재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상득
이석현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진병헌	진여옥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반대의원(84인)

강기갑	강재섭	강창일	고진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낙성	김덕룡	김동철
김석준	김선미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혁규	김효석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석호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복기왕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우제항
유선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병석
이상열	이승희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임인배	임종인	장윤석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중복
정청래	조승수	주승용	천영세
최구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20인)

권영세	김무성	김우남	김재홍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문학진
박성범	심재철	이상민	이영호
이인영	이종구	장영달	전재희
정화원	제종길	최병국	홍미영

(박희태·허태열 의원 버튼 미조작, 조경태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31인, 찬성의원 127인임)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의원(234인)

찬성의원(16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일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송영길 송영선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근식 이기우
 이광재 이상득 이석현 이영호
 이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용희 이종걸 이주호 이철우
 이재창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이해봉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임종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장향숙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두언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의용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조성태 조일영 천정배 최경환
 주승용 진영 천병국 최연희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55인)

강기갑 강재섭 강창일 고진화
 광성문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낙성 김덕룡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종률 김효석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세환 박순자
 서병수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우제창 유선호
 이계진 이규택 이병석 이상열
 이승희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임인배 임종인 장윤석
 정문헌 정종복 조승수 천영세
 최구식 최성성 최순영 최인기
 허천 현애자 홍문표

기권의원(15인)

권영세 김무성 나경원 문학진
 박병석 박성범 신중식 이광철
 이상민 이종구 장영달 전재희

정화원 홍미영 홍창선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4인)

찬성의원(23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근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계진
 이경숙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광재 이기우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영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안 병 업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유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친 영 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이 기 우	이 목 회	이 병 석	이 상 득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이 상 민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희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황 우 여	황 진 하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3인)

찬성의원(23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5인)

찬성의원(23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희 최규식 최병국 최성영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김정훈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희정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황우여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류근찬 박세환 정화원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세환 정화원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기춘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성범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창달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원
 박형준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강두 이강래
 윤원호 윤호중 이계안 이계진
 이경숙 이광철 이군현 이미경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상열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영순
 이석현 이송희 이원영 이윤성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재웅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주호
 이재창 이종결 이종구 이호웅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임종석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욱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기권의원(2인)

박세환 정화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1인)

찬성의원(21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강두 이강래
 윤원호 윤호중 이계안 이계진
 이경숙 이광철 이군현 이미경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상열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영순
 이석현 이송희 이원영 이윤성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재웅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주호
 이재창 이종결 이종구 이호웅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임종석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욱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영 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춘 진	김 충 환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혁 규
이 기 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이 상 득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희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철 우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배 기 선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료
주 승 용	진 영	천 정 배	최 경 환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유 기 준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시 민	유 인 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황 우 여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반대의원(15인)

강 기 갑	권 영 길	김 기 현	노 회 찬
단 병 호	박 형 준	심 상 정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재 응	이 해 봉	조 승 수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의원(3인)

김 종 료 송 영 선 이 광 철
 (김재원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의원 213인, 기권의원 3인임)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2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세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22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진화 고흥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반대의원(2인)

서병수 이주호

기권의원(3인)

이상배 정화원 조배숙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연구자에대한국가

유공자에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21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진화 고흥길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3인)

김성조 김재원 안홍준

기권의원(2인)

김무성 이상배

투표의원(256인)

찬성의원(14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홍 김기석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재성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109인)

강재섭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영덕

김용갑	김재원	김정부	김정훈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김충환	김학송	김학원	김희정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나경원	남경필	노회찬	단병호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류근찬	맹형규	박근혜	박성범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송영선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방호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승희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이영순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이해봉	이혜훈	장윤석	전여옥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화원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조승수	주성영	진영	천영세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황진하				이승희	이시중	이영순	이영호

○調達事業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52인)

찬성의원(24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박성범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중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7인)

김광원	박세환	안홍준	이상배
-----	-----	-----	-----

정갑윤 정화원 한선교
기권의원(3인)
 김무성 김정부 민병두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15인)

고홍길 김기현 김석준 김희정
 맹형규 박재완 이경재 이상득
 이영순 이인제 이혜훈 주성영
 진영 최연희 현애자

기권의원(4인)

김효석 박근혜 박세환 신국환
 (이상득 의원 버튼 미조작, 박재완 의원석 집계 착오, 이계진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반대의원 15인, 기권의원 4인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도

시건설특별법안

투표의원(177인)

찬성의원(15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김교홍	김근태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인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5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근태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장전병헌 장정동채 장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22인)

강재섭 권경석 김기현 김성조
 김충환 김학송 맹형규 박희태
 심재엽 안명옥 유기준 이강두
 이상득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해봉 정종복 주성영 진영
 최경환 황진하
 (김덕규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72인, 찬성의원 150인임)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준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박배기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박복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서손봉 서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우원혜 영원희 영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열 이상득
 이상민 이승희 이시종 이석현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윤성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순영 최재천
 최철국 최인기 최재형 최명숙
 최한 최광화 최한

○出席議員(284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석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出張議員(8人)

공성진 김영선 김원기 박영선
 이낙연 임태희 정덕구 채수찬

○請暇議員(1人)

지병문

○出席國務委員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법무부장관 김승규
 국방부장관 윤광웅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농림부장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환경부장관 곽결호
 노동부장관 김대환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出席政府委員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여성부차관 신현택
 해양수산부차관 강무현

【報告事項】

○議長職務代理指定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덕규
 2월25일부터
 의장 귀국시까지
 (2월25일)

○常任委員辭任및補任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정성호	법제사법	보건복지	열린우리당
문병호	보건복지	법제사법	

(2월28일)

○特別委員辭任및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신행정수도의건 설을위한특별조 치법위헌결정후 속대책및지역 균형발전특별	박병석	박기춘	열린우리당
	노영민	주승용	
	박상돈	김영춘	
	구노회	조정태	

(2월28일)

○議案提出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월25일 전병헌·염동연·노현송·이시종·
 김태홍·정성호·서혜석·유시민·우제창·
 김낙순·이상경·김재홍·박기춘·신중식·
 유선호·이근식·조정태 의원 발의)

3월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

(2월25일 권영길·손봉숙·강기갑·노회찬·
 김효석·김홍일·단병호·심상정·이계진·
 이낙연·이상열·이영순·이정일·이재오·
 장향숙·조승수·최순영·천영세·한화갑·
 현애자 의원 발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2월25일 원희룡·권오을·김기현·김명주·
 김양수·남경필·박승환·박형준·안홍준·
 권영세·이계경·이성권·이주호·정병국·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월25일 강기정·김동철·김우남·양형일·
 구노회·최인기·서갑원·김태홍·안상수·
 정봉주·김춘진·장향숙·백원우·이기우·
 이해봉·신중식·오제세·유필우·황우여·
 노현송·주호영·유시민·우제창·염동연·
 김영춘·허태열·강혜숙·이혜훈 의원 발의)

3월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軍人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2월28일 국방위원장 제출)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
 案)

(이상 2건 2월28일 정무위원장 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大氣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水質環境保全法 全部改正法律案(代案)**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이상 5건 2월28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월28일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월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제출)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월28일 한국방송공사사장 제출)

이상 2건 3월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안

경률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안경률 · 박재완 · 김용갑 · 이규택 · 맹형규 의원 외 7인 발의)

3월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國會議法 一部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권영세 · 김정훈 · 박재완 · 엄호성 · 이해봉 · 권오을 · 박승환 · 유기준 · 정병국 · 고진화 · 김기현 의원 발의)

3월2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消費者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오제세 · 류근찬 · 유시민 · 장복심 · 이해봉 · 신중식 · 노현송 · 허태열 · 서혜석 · 강혜숙 · 우제창 · 심재덕 · 이혜훈 의원 발의)

所得稅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윤건영 · 고경화 · 광성문 · 김기현 · 김무성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선 · 김정부 · 김형오 · 박세환 · 박재완 · 박창달 · 송영선 · 엄호성 · 이규택 · 이상득 · 이재오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 정문헌 · 정화원 · 진수희 · 최경환 의원 발의)

法人稅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윤건영 · 고경화 · 광성문 · 김기현 · 김무성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선 · 김정부 · 김형오 · 박세환 · 박재완 · 박창달 · 송영선 · 엄호성 · 이규택 · 이상득 · 이재오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 정문헌 · 정화원 · 진수희 · 최경환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윤건영 · 고경화 · 광성문 · 김기현 · 김무성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선 · 김정부 · 김형오 · 박세환 · 박재완 · 박창달 · 송영선 · 엄호성 · 이규택 · 이상득 · 이재오 · 이종구 ·

이해봉 · 전여옥 · 정문헌 · 정화원 · 진수희 · 최경환 의원 발의)

국세청장후보자(이주성) 인사청문요청안

(2월28일 대통령 제출)

이상 5건 3월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휴대폰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방해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3월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망언 규탄 및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결의안

(2월28일 최성 · 유선호 · 김성곤 · 송영길 · 이종걸 · 이석현 · 이화영 · 박영선 · 염동연 · 강기정 · 노현송 · 강창일 · 정청래 · 전병헌 · 이시종 · 이은영 · 김태홍 · 안민석 · 홍창선 · 우제향 · 이원영 · 지병문 · 김동철 · 고진화 · 박계동 · 박재완 · 박창달 · 이상득 · 이재오 · 정문헌 · 조승수 · 손봉숙 · 김효석 의원 발의)

3월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이계경 · 엄호성 · 박세환 · 남경필 · 이성권 · 김재경 · 권영세 · 김춘진 · 이인기 · 김양수 의원 발의)

3월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이계경 · 이인기 · 엄호성 · 박세환 · 남경필 · 고흥길 · 이성권 · 김재경 · 권영세 · 김춘진 · 박승환 · 김기현 의원 발의)

3월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2월28일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2월28일 김영숙 · 고경화 · 고흥길 · 권오을 · 김문수 · 김학송 · 김희정 · 박계동 · 박세환 · 박순자 · 박찬숙 · 박창달 · 배일도 · 안경률 · 안명옥 · 안상수 · 유기준 · 유기홍 · 이경재 ·

이재오 · 진영 · 허천 · 권경석 · 안택수 · 황진하 의원 발의)

3월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內水面漁業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2월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公衆衛生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2월28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신혜수) 선출안

(2월28일 의장 제의)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월28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特殊教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2월28일 교육위원장 제출)

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法院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4건 2월28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3월2일 김원웅 의원 외 29인 발의)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3월2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議案審査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1일 정부 제출)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2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성매대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04년10월26일 조배숙 · 구논회 · 김애실 · 김원웅 · 김현미 · 박재완 · 엄호성 · 오제세 · 유승희 · 이경숙 · 이상경 · 이원영 · 이운성 · 장향숙 · 정청래 · 진수희 · 한병도 · 황우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家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2일 김석준 · 엄호성 · 이재오 · 서병수 · 김영숙 · 안명옥 · 맹형규 · 이인기 · 이성권 · 박성범 · 이해훈 · 김희정 · 김재경 · 윤건영 의원 발의)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26일 정부 제출)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24일 최연희 · 심재엽 · 박세환 · 김재원 · 이계진 · 고진화 · 윤호중 · 이은영 · 정문헌 · 민병두 · 조일현 · 이광재 · 정성호 · 허천 · 정몽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중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6일 김애실 · 권경석 · 김정훈 · 나경원 · 박순자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숙 · 신국환 · 심재엽 · 엄호성 · 이계경 · 이해훈 · 임인배 · 이군현 의원 발의)

사법보좌관법안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2004년9월7일 정부 제출)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24일 최연희 · 심재엽 · 박세환 · 김재원 · 이계진 · 고진화 · 윤호중 · 이은영 · 정문헌 · 민병두 · 조일현 · 이광재 · 정성호 · 허천 · 정몽준 의원 발의)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1월6일 정부 제출)

民法中改正法律案

(2004년6월3일 정부 제출)

民法中改正法律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9일 이경숙 · 손봉숙 · 정두언 · 이미경 · 유승희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강성종 ·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회 · 권선택 · 김교홍 · 김근태 · 김기석 · 김낙순 · 김덕규 · 김동철 · 김맹곤 · 김명자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영주 · 김영춘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종률 · 김진표 · 김춘진 · 김충환 · 김태년 · 김태홍 · 김한길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희선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석 · 박홍수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변재일 · 복기왕 · 서갑원 · 서재관 · 신병렬 · 송영길 · 신계륜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심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시덕 · 오영식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

제항 · 원혜영 · 유기홍 · 유선호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래 · 이계안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목희 · 이상경 · 이상락 · 이상민 · 이석현 · 이승희 · 이시중 ·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 이철우 · 이해찬 · 이호용 · 이화영 · 임종석 · 임종인 · 임채정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헌 · 정덕구 · 정동채 · 정봉주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장선 · 정청래 · 제종길 · 조경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성태 · 조일현 · 조정식 · 주승용 · 지병문 · 채수찬 · 천정배 · 최규성 · 최규식 · 최성 · 최용규 · 최재성 · 최재천 · 최철국 · 한광원 · 한명숙 · 한병도 · 홍미영 · 홍재형 · 홍창선 의원 발의)

民法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14일 노회찬 · 심상정 · 천영세 · 단병호 · 강기갑 · 최순영 · 조승수 · 권영길 · 이영순 · 현애자 의원 발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2004년11월6일 정부 제출)

破産法 一部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월2일 노회찬 · 권영길 · 강기갑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출)

이상 1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3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2004년8월27일 정부 제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12월24일 정부 제출)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25일 정부 제출)

割賦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7일 이계경 · 김양수 · 유승민 · 엄호성 · 정종복 · 나경원 · 박찬숙 · 임태희 · 진영 · 이승희 · 이상경 의원 발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6일 문학진 · 김낙순 · 김영춘 · 김원웅 · 박명광 · 신학용 · 우제창 · 우제항 · 윤호중 · 이근식 · 이상경 · 채수찬 · 최재성 의원 발의)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8일 박형준 · 김양수 · 이계경 · 권철현 · 이성권 · 박승환 · 안홍준 · 정병국 · 유기준 · 김희정 · 정종복 · 심재철 · 김석준 · 정장선 · 박재완 · 손봉숙 의원 발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1월31일 김현미 · 송영길 · 홍창선 · 김명자 · 장영달 · 노현송 · 이원영 · 최성 · 문학진 · 신기남 · 조정태 · 강혜숙 · 정청래 · 장향숙 · 우원식 · 주승용 · 신중식 · 장복심 · 이인기 · 이광철 · 서갑원 · 김동철 · 김영주 · 이인영 · 이상경 · 박명광 · 조배숙 · 정장선 · 김재홍 · 한병도 · 이근식 · 염동연 · 안영근 · 강창일 · 복기왕 · 김영춘 · 임종석 · 한명숙 · 원혜영 · 정성호 · 문석호 · 구논회 · 김형주 · 김태홍 · 최재성 · 백원우 · 지병문 · 우상호 · 민병두 · 이철우 · 김춘진 · 우제항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8일 김재홍 · 최인기 · 김낙순 · 이영순 · 김재윤 · 강기정 · 송영길 · 유시민 · 노현송 · 오영식 · 이경숙 · 박홍수 · 현애자 · 윤원호 · 심재덕 · 장경수 · 이원영 · 정성호 · 고진화 · 유선호 의원 발의)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2일 정부 제출)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6일 나경원 · 권영세 · 염동연 · 김재홍 · 김홍일 · 박순자 · 안상수 · 김정훈 · 문학진 · 김태홍 · 장경수 · 제종길 · 임종인 · 이상경 · 고진화 · 이승희 · 전병헌 · 김원웅 · 김영춘 · 이종걸 · 김희선 · 이인제 · 이인영 · 이미경 · 정두언 · 남경필 · 원희룡 · 조정식 · 서상기 · 이계경 · 엄호성 · 허태열 · 박종근 의원 발의)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5일 정부 제출)

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0일 고진화·김원웅·김재원·노현송·박세환·박창달·손봉숙·오시덕·이근식·이종걸·이해봉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정무위원장 보고

調達事業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일 이상열·노영민·최인기·김재홍·송영길·류근찬·양형일·이정일·김희선·이낙연·김홍일·선병렬·김한길·나경원·김태홍·한화갑·최성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안

(2004년9월1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韓國國際交流財團法中改正法律案

在外同胞財團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2004년11월2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

(2004년7월22일 노회찬·정장선·권오을·고진화·강기갑·강기정·구논회·권영길·김기현·김원웅·김재운·김정훈·김진표·김충환·김태홍·김홍일·김희선·노웅래·노현송·단병호·유근찬·박기춘·백원우·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민석·오영식·우제항·유시민·유정복·이강래·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락·이상열·이영순·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호웅·임종인·장경수·정봉주·정성호·정청래·제종길·조승수·조정식·천영세·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현애자·홍미영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3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2월15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김명자 의원 발의)

(2월2일 김명자 의원 외 56인 발의)

1959년 12월 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

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1월3일 장영달·김명자·김명주·김영덕·김용갑·김종률·김태홍·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학진·문희상·박순자·박재완·신국환·신기남·신중식·심재덕·엄호성·오시덕·오제세·유재건·이근식·이낙연·이상득·장윤석·정성호·조성태·최연희·최재성·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19일 정부 제출)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2일 송영선·권경석·김광원·김기현·김무성·김문수·김성곤·김영선·김용갑·김재경·김재원·박세환·박진·서상기·신국환·심재덕·안상수·염동연·유승민·이군현·이상득·이시종·이해봉·장복심·정성호·진수희·허천·홍준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국방위원장 보고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6일 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6일 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6일 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6일 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2004년9월15일 정부 제출)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1일 정부 제출)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3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30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學校用地確保에 관한 特例法中改正法律案

(2004년7월14일 정부 제출)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30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學校用地確保에 관한 特例法廢止法律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13일 이상민·선병렬·우윤근·우원식·김재윤·김태년·유승희·서갑원·한병도·한광원·조정식·김원웅·이화영·권선택·노영민·문석호·전병현·구노희·우제창·송영길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特殊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구노희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20일 구노희·최재성·최순영·백원우·이인영·김맹곤·한병도·이석현·이미경·장향숙·지병문·정봉주·유기홍·김태홍·임종석·김동철·강기정·유시민·박병석·김형주·박찬숙·권선택·복기왕 의원 발의)

特殊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18일 정부 제출)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2004년6월2일 정부 제출)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2일 이종걸·황우여·최인기·유재건·이상락·박홍수·김현미·김영춘·김영주·민병두·노현송·이상열·백원우·김태환·조정식·오제세·안상수·박계동·엄호성·주호영·김낙순·김원웅·유시민·장향숙·김덕규·안병엽·김영숙·김기현·오영식·이철우·김석준·단병호·박병석·김형주·김태홍·심재철·장복심·김성곤·조배숙·이석현·서재관·정몽준·양형일·김충환·이재창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14일 김영숙·진수희·황우여·강재섭·권경석·김정훈·김양수·김성조·이

명규·주호영·김광원·허천·진영·김애실·황진하·이계진·홍문표·장윤석·배일도·안경률·김병호·이방호·고홍길·전여옥·김무성·임인배·한선교·남경필·정병국·이계경·김석준·이재오·이재웅·안택수·심재엽·박계동·장복심·맹형규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17일 허천·박세환·허태열·김태환·안택수·박찬숙·김석준·유승민·박계동·권경석·김맹곤·진수희·정문현·김기현·정종복·이방호·엄호성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29일 정부 제출)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5일 이호웅·엄호성·이재오·최인기·김원웅·노영민·강혜숙·안상수·우원식·신학용·김태홍·임종석·주승용·김덕규·유시민·이원영·이상락·김영춘·심재덕·신중식·김교홍·전재희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월4일 최순영·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현애자·고진화·복기왕·안민석·안영근·엄호성·이근식·진수희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교육위원장 보고

郵便法中改正法律案

(2004년9월7일 정부 제출)

別定郵便局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5일 정부 제출)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6일 김석준·박재완·박순자·황우여·정종복·권영세·김희정·이인기·이성권·진영 의원 발의)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4년10월6일 정부 제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16일 이상민·유승희·구노희·제종길·노웅래·이화영·선병렬·우윤근·김태년·김진표·이영호·권선택·우원식·한광원·백원우·조정식·윤호중·노영민·이계안·문석호·전병현·이종걸 의원 발의)

基礎科學研究振興法中改正法律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9일 서상기·홍창선·공성진·안병엽·전여옥·진영·엄호성·권영세·김명자·권선택·김태환·김재경·심재철·우윤근·김성곤·오시덕·황진하·유재건·이용희·김무성·조배숙·배기선·정의용·허천·황우여·이석현·김희선·정세균·박진·원희룡·김부겸·윤호중·김한길·양형일·박상돈·최인기·이윤성·권오을·이군현·서갑원·권철현·김효석·김기현·이정일·이낙연·김기석·고홍길·이인기·이광재·신학용·박종근·박순자·김영선·제종길·이계진·최성·최재천·장영달·조경태·신국환·이강래·이병석·장기정·박계동·이상열·염동연·안영근·김맹곤·곽성문·김태년·유승민·안상수·이원영·김병호·김양수·이상배·이종구·정갑윤·이상경·정병국·한화갑·김원웅·최재성·류근찬·주성영·원혜영·강재섭·김애실·오제세·이시종·안택수·허태열·정성호·진수희·김낙순·김영춘·김석준·김문수·김광원·이미경·이경재·배일도·박찬석·김진표·이상득·강성중·박병석·김형오·이장두·임태희·맹형규·유승희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순직한국자재대한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에관한대정부건의안

(2004년9월21일 홍창선·김명자·박찬숙·홍미영·정두언·유승민·이상락·김태년·안상수·심재덕·김낙순·엄호성·김재홍·한화갑·황우여·우제창·이재오·정성호·염동연·이해봉·안병엽·김영덕·이종걸·유선호·서상기·김석준·백원우·김영춘·노현송·진수희·이원영·강성중·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0일 우상호·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정청래·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0일 정청래·이미경·강혜숙·김

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8일 최구식·이재오·이규택·남경필·권경석·박형준·이재웅·이주호·박재완·김재경·안홍준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월1일 이광철·정청래·우상호·이경숙·민병두·강혜숙·권선택·윤원호·안민석·이계진·김재윤·천영세·박기춘·노웅래·이미경 의원 발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0일 안민석·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정청래 의원 발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4일 정부 제출)

大韓民國藝術院法中改政法律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2일 이광철·임종인·안민석·우상호·배기선·김태년·박병석·김춘진·김영주·이상민·이경숙·최용규·전병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定期刊行物の登錄等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0일 정청래·이미경·강혜숙·김재윤·김재홍·노웅래·민병두·우상호·윤원호·이경숙·이광철·안민석 의원 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4년10월29일 주승용·최철국·김동철·양형일·박상돈·김태홍·김기석·이낙연·김학송·김태환·조경태·김우남·이근식·김맹곤·김성곤·장복심·정장선·허태열·김병호·안홍준·정성호·김원웅·엄호성·이해봉·노영민·이호웅·윤호중·신중식·우윤근·최인기 의원 발의)

증명전의일제침략역사자료관추진권고결의안

(2004년12월13일 김희선·강기갑·강혜숙·김낙순·김선미·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충환·김태년·김태홍·김현미·노영민·노

응래 · 노현송 · 문학진 · 박기춘 · 박홍수 · 송영길 · 신기남 · 신중식 · 양승조 · 오시덕 · 우원식 · 우제창 · 원혜영 · 유선호 · 유승희 · 윤호중 · 이강래 · 이원영 · 이인영 · 이종걸 · 이화영 · 임종석 · 정청래 · 조경태 · 천정배 · 최규식 · 최재성 · 홍미영 · 백원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04년6월28일 정병국 · 안상수 · 이해봉 · 이인기 · 서병수 · 김영덕 · 유승민 · 윤호중 · 김충환 · 허천 · 안명옥 · 심재철 · 노응래 · 이상득 · 오제세 · 이재오 · 정몽준 · 선병렬 · 최성 · 권경석 · 김석준 · 황우여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1월30일 우상호 · 이미경 · 강혜숙 · 김재윤 · 김재홍 · 노응래 · 민병두 · 정청래 · 윤원호 · 이경숙 · 이광철 · 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출)

이상 12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오시덕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2월3일 오시덕 · 조일현 · 한광원 · 이철우 · 신중식 · 안병엽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 정청래 · 선병렬 · 김재윤 · 강혜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9일 정부 제출)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4년8월19일 이영호 · 서재관 · 이은영 · 강기갑 · 김태환 · 이규택 · 우윤근 · 오제세 · 김우남 · 이상득 · 안홍준 · 김태홍 · 이상민 · 조일현 · 이정일 · 한광원 · 박홍수 · 강창일 · 김효석 · 유선호 · 최인기 · 우원식 · 주승용 · 신중식 · 이원영 · 이시중 · 이상배 · 이상열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방법중개정법률안(안병엽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2월3일 안병엽 · 조일현 · 한광원 · 오시덕 · 이철우 · 신중식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의원 발의)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일현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2월3일 조일현 · 한광원 · 오시덕 · 이철우 · 신중식 · 안병엽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 김낙순 · 우원식 · 장향숙 · 노영민 의원 발의)

수목원조성및진흥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1월11일 허태열 · 안상수 · 유기준 · 김재원 · 안경률 · 박재완 · 이재오 · 이해봉 · 엄호성 · 전재희 · 황우여 · 이인기 · 정성호 · 장복심 · 김양수 의원 발의)

水上레저安全法改正法律案(박승환 의원 대표 발의)

(2004년9월17일 박승환 · 김양수 · 김재원 · 이철우 · 정문헌 · 강재섭 · 이성권 · 원희룡 · 이상득 · 권오을 · 황우여 · 정화원 · 정병국 · 이인기 · 신중식 · 김영덕 · 이계경 · 이재웅 · 이주호 · 이재오 · 이종구 · 박형준 · 김희정 · 박재완 · 정종복 · 이근현 · 이영호 · 허태열 · 김기현 · 안상수 · 김우남 · 서병수 · 한광원 의원 발의)

公有水面埋立法中改正法律案

(2004년6월17일 정부 제출)

公有水面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4년7월22일 정부 제출)

船員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2월1일 정부 제출)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2월15일 정부 제출)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水上레저安全法中改正法律案(한광원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2월3일 한광원 · 조일현 · 오시덕 · 이철우 · 신중식 · 안병엽 · 박홍수 · 이시중 · 김우남 · 이영호 · 박찬석 · 노응래 · 안영근 · 신학용 · 김교홍 · 민병두 · 강기갑 · 노희찬 · 홍미영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쌀소득보전에關한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04년12월28일 김재원 · 김광원 · 김명주 · 김영덕 · 김영숙 · 김충환 · 김형오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안택수 · 엄호성 · 유기준 · 이경재 · 이규택 · 이방호 · 이상득 · 이상배 · 정병국 · 정종복 · 홍문표 의원 발의)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關한법률개정법률안

(2004년12월29일 정부 제출)

內水面漁業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26일 정부 제출)

內水面漁業法中改正法律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일 이시종 · 조일현 · 한광원 · 오시덕 · 이철우 · 신중식 · 안병엽 · 박홍수 · 김우남 · 이영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전자거래기본법증정법률안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2004년11월9일 정부 제출)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定法律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1일 최철국 · 오시덕 · 이해봉 · 배기선 · 정두언 · 유기준 · 유승민 · 지병문 · 장복심 · 박찬석 · 박재완 · 윤원호 · 김교홍 · 이상열 · 서갑원 의원 발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월28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1일 한병도 · 이규택 · 백원우 · 오제세 · 김양수 · 유선호 · 신중식 · 이상락 · 김석준 · 정몽준 · 김우남 · 김교홍 · 노현송 · 배일도 · 이근식 · 김혁규 · 황우여 · 이경재 · 김태년 · 오영식 · 최규성 · 이광재 의원 발의)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9일 정부 제출)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27일 최인기 · 신중식 · 유선호 · 조배숙 · 이근식 · 유근찬 · 안상수 · 이경숙 · 전재희 · 이인기 · 김원웅 · 김영덕 · 구논희 · 김태환 · 주승용 · 이철우 · 김명곤 · 김명주 · 오제세 · 박상돈 · 양형일 · 장경수 · 서재관 · 이은영 · 정몽준 의원 발의)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3일 최연희 · 정문헌 · 박세환 · 김재원 · 조일현 · 전여옥 · 심재엽 · 허천 · 이계진 · 이은영 · 고진화 · 최순영 · 이영순 · 정성호 · 노회찬 · 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18일 고경화 · 심재철 · 이승희 · 정두언 · 노웅래 · 윤건영 · 안명옥 · 이상배 · 전재희 · 김양수 · 이근현 · 김영덕 · 진수희 · 임태희 · 정화원 · 손봉숙 · 제종길 · 이근식 · 노현송 · 이원영 · 정청래 · 장복심 · 정문헌 · 이경재 · 배일도 · 김석준 · 강재섭 · 김영춘 · 이인기 · 허태열 · 현애자 · 유승민 · 권영길 · 허천 의원 발의)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강기정 · 최규성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이기우 · 한병도 의원 발의)

醫療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 · 최규성 · 강기정 · 김선미 · 유시민 · 장향숙 · 김교홍 · 이상락 · 심재덕 · 오영식 · 김춘진 · 원혜영 · 한명숙 · 문병호 · 임종석 · 이석현 · 정성호 · 한병도 의원 발의)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藥事法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22일 김태환·김기현·이인기·이상득·김석준·최인기·박상돈·유승민·이근현·이철우·최용규·정성호·강재섭·강혜숙·이근식·김재원·박승환·정종복·노현송·김우남·전재희·박재완·노웅래·허태열·임종석·황우여·엄호성·이계경·안홍준·신중식·김태년·서재관·오제세 의원 발의)

公衆衛生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5일 이호웅·엄호성·이재오·최인기·김원웅·노영민·원혜영·강혜숙·안상수·우원식·김영춘·서재관·신학용·김태홍·임종석·주승용·김덕규·유시민·이원영·이상락·황우여·심재덕·신중식·김교홍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11월26일 정부 제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9일 이기우·최규성·강기정·김선미·유시민·장향숙·김교홍·이상락·심재덕·오영식·김춘진·원혜영·한명숙·문병호·임종석·이석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출)

이상 1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6일 김형주·배일도·우원식·장복심·엄호성·장향숙·제종길·김영주·원혜영·김부겸·안민석·유정복·정병국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일 우원식·김낙순·김영주·김형주·노영민·우윤근·장복심·조일현·조정식·제종길 의원 발의)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일 제종길·김영주·조정식·장복심·우원식·김형주·김우남·이인영·장향숙·이목희·박홍수 의원 발의)

水道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일 장복심·김영주·조정식·우원식·김형주·제종길·김기석·노웅래·노영민·장경수·이목희·김태년·이시종·김혁규·김맹곤·김교홍·이상락·선병렬 의원 발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4일 김영주·조정식·장복심·우원식·김형주·제종길·박홍수·배일도·이덕모·단병호·공성진·이인영 의원 발의)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6일 김형주·노현송·양형일·우원식·원혜영·장복심·제종길·조정식·최규식·홍미영·김영주 의원 발의)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2일 장복심·김형주·노영민·노웅래·제종길·조정식·김태년·김기석·김재운·송영길·오영식·김영춘·정두언·이낙연·이인영·배기선·박상돈·이호웅·권선택·이철우·김태홍·최재성·이목희·최철국·염동연·이상락·홍준표 의원 발의)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4년12월1일 정부 제출)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일 김영주·오시덕·최재성·송

영길 · 정성호 · 노현송 · 이근식 · 이상락 · 강혜숙 · 박순자 · 이해봉 · 서재관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1일 정성호 · 박재완 · 이철우 · 황우여 · 임채정 · 유재건 · 김재홍 · 복기왕 · 신기남 · 정장선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2004년12월2일 정부 제출)

야생동 · 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0월21일 박세환 · 이윤성 · 김재원 · 안상수 · 윤건영 · 유승민 · 이인기 · 서병수 · 이근현 · 이재오 · 정문헌 · 진수희 의원 발의)

야생동 · 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일 제종길 · 김영주 · 조정식 · 장복심 · 우원식 · 김형주 · 김우남 · 이인영 · 장향숙 · 이목희 · 박홍수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3일 조정식 · 김영주 · 장복심 · 우원식 · 김형주 · 제종길 · 이화영 · 김부겸 · 한병도 · 정장선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4일 한광원 · 박찬석 · 엄호성 · 우제창 · 신학용 · 김교홍 · 단병호 · 노회찬 · 이호웅 · 강기갑 · 천영세 · 제종길 · 권영길 · 신기남 · 장복심 · 조일현 · 오제세 · 이윤성 · 박계동 · 박홍수 · 김우남 · 이경숙 · 고진화 · 오시덕 · 김재홍 · 노웅래 · 현애자 · 이근식 · 신중식 · 김혁규 · 문학진 의원 발의)

水質環境保全法改正法律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5일 제종길 · 공성진 · 김명자 · 김영주 · 김원웅 · 김태홍 · 김형주 · 단병호 · 박홍수 · 배일도 · 우원식 · 이목희 · 이영호 · 이철우 · 장복심 · 정두언 · 조정식 · 한광원 의원 발의)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9일 공성진 · 배일도 · 안상수 · 엄호성 · 이상득 · 박재완 · 김재원 · 김영춘 · 허태열 · 이근식 · 심재엽 · 황우여 · 정성호 · 심재덕 · 주승용 · 나경원 · 제종길 · 이원영 · 이근현 의원 발의)

水質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

(1월17일 정부 제출)

水質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월25일 조정식 · 이목희 · 제종길 · 정두언 · 우원식 · 김영주 · 장복심 · 조경태 · 한선교 · 단병호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20일 김석준 · 배일도 · 신중식 · 박세환 · 유근찬 · 황우여 · 강재섭 · 이인기 · 양형일 · 이재오 · 나경원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1일 장복심 · 문석호 · 노영민 · 노웅래 · 제종길 · 조정식 · 김태년 · 김기석 · 김재윤 · 송영길 · 오영식 · 김영춘 · 이낙연 · 이인영 · 배기선 · 박상돈 · 이호웅 · 권선택 · 이철우 · 김태홍 · 최재성 · 이목희 · 최철국 · 염동연 · 이상락 · 홍준표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이경제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2일 이경제 · 김재윤 · 배일도 · 정병국 · 정성호 · 김영주 · 이윤성 · 이상득 · 진수희 · 서병수 · 안상수 · 장복심 · 김태년 · 신중식 · 황우여 · 염동연 · 허천 · 공성진 · 김재원 · 김양수 · 정두언 · 김기현 · 전재희 · 이인재 · 이인기 · 박순자 · 정몽준 의원 발의)

(이상 1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출)

이상 2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1일 김동철 · 양형일 · 김태홍 · 강기정 · 신중식 · 김영춘 · 김우남 · 지병문 · 염동연 · 백원우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1일 허태열 · 안상수 · 유기준 · 김재원 · 안경률 · 박재완 · 이재오 · 이해봉 · 엄호성 · 전재희 · 황우여 · 이인기 · 정성호 · 장복심 · 김양수 의원 발의)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24일 이낙연 · 강혜숙 · 김기현 · 김덕규 · 김영덕 · 김재홍 · 노웅래 · 박성범 · 박순자 · 엄호성 · 유시민 · 이근식 · 이상득 · 이상락 · 이철우 · 임종석 · 정문헌 · 정성호 · 최인기 · 최철국 의원 발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8일 주승용 · 우윤근 · 이낙연 · 이호웅 · 김동철 · 김기석 · 장복심 · 김우남 · 김맹곤 · 염동연 · 김효석 · 최인기 · 배일도 · 최철국 · 신중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

(2004년12월15일 정부 제출)

지울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촉구결의안

(2월1일 조승수 · 고경화 · 고진화 · 권영길 · 권영세 · 권오을 · 김광원 · 김기현 · 김낙성 · 김명주 · 김석준 · 김선미 · 김영덕 · 김영선 · 김원웅 · 김재원 · 김재윤 · 김재홍 · 김정부 · 김종인 · 김춘진 · 김충환 · 김태환 · 나경원 · 남경필 · 노웅래 · 노회찬 · 단병호 · 맹형규 · 문학진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종근 · 박찬숙 · 박창달 · 서상기 · 손봉숙 · 심상정 · 심재덕 · 심재엽 · 심재철 · 안명옥 · 안민석 · 안상수 · 안택수 · 안홍준 · 우원식 · 류근찬 · 유승민 · 유승희 · 윤건영 · 홍준표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방호 · 이상배 · 이상열 · 이석현 · 이성권 · 이영순 · 이영호 · 이인기 · 이정일 · 이종구 · 이주호 · 이철우 · 이해봉 · 이해훈 · 장향숙 · 전재희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봉주 · 정화원 · 제종길 · 강기갑 · 진수희 · 진영 · 천영세 · 최경환 · 최구식 · 최순영 · 최재성 · 한선교 · 허천 · 현애자 · 홍문표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월5일 정세균 · 원혜영 의원 외 149인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발의)

(2004년8월25일 심재엽 의원 외 22인 발의)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3일 이낙연 · 김덕규 · 김태년 · 문석호 · 백원우 · 신국환 · 신중식 · 염동연 · 우제창 · 이철우 · 이호웅 · 주승용 · 최인기 · 한화갑 의원 발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박성범 의원 발의)

(2004년12월10일 박성범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8일 장경수 · 윤호중 · 제종길 · 김원웅 · 김태년 · 노영민 · 조경태 · 이호웅 · 김동철 · 임종인 · 김맹곤 · 정청래 · 김재윤 · 장복심 의원 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12월15일 정부 제출)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6일 전재희 · 박진 · 황우여 · 심재철 · 이인기 · 박재완 · 이재오 · 정문헌 · 강재섭 · 박세환 · 김석준 · 정화원 · 윤건영 · 박찬숙 · 고진화 · 권오을 · 이해훈 · 정병국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9일 안상수 · 엄호성 · 이인기 · 박창달 · 박세환 · 정성호 · 허태열 · 이재오 · 이해봉 · 박순자 · 이규택 · 이윤성 · 김영덕 · 이근식 · 황우여 · 안택수 · 김재원 · 권영세 · 정종복 · 정병국 · 나경원 · 정문헌 · 이군현 · 서병수 · 박찬숙 · 안병엽 · 서재관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월3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여성위원장 보고

국회의원(정문헌)징계안

(2004년10월8일 이종걸 의원 외 22인 발의)

국회의원(박진)징계안

(2004년10월8일 이종걸 의원 외 22인 발의)

국회의원(안영근)징계안

(2004년10월8일 남경필 의원 외 24인 발의)
(이상 3건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審査期間指定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월5일 정세균 · 원혜영 의원 외 149인 발의)

國家安全保障會議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2월15일 정부 제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종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3월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 · 체계심사 기간을 3월2일 21시30분까지로 지정함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월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월 2일 22시까지로 지정함